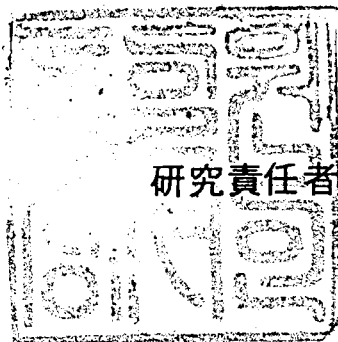


祖國統一 모델에 關한 研究

1989



研究責任者 : 허 준 혁 (檀國大)

國 土 統 一 院

冊 을 내 면 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統一 및 北韓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研究結果 報告書입니다.

本 研究는 國家聯合모델, 聯邦國家모델, 中立化統一모델 등 기존 統一論을 모델별로 分析하였으며, 그리고 研究者의 統一論인 배달共同體論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要 約

엄격한 의미에서의 오늘날 우리 배달민족(靑島民族, 檀族)의 통일문제는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서 만큼은 祖國統一이라 불리워져야 한다.

물론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平和統一, 民族統一, 國土統一등 여러 統一論들이 많으나 이같은 모든 의미들을 광범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祖國統一이란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祖國統一이란 민족동질성회복에 의한 진정한 民族統一과 平和的 方法에 의한 국가적 동질성회복의 최고형태로서 國土統一이라는 명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배달민족모두가 최대한의 행복과 번영을 누리고자함인 것이다.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의견들과 정책들이 제시되었고 또 추진되어왔다.

이같은 統一論議들이 당장에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해서 無意味했거나 無益했다고 쉽게 단정짓거나 경시해버려서는 결코 안된다. 통일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며 이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가 맞지않으면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적 관념적 조급성에서 지나치게 통일의 비관론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쉽게 냉소적인 경향으로 흘러 無關心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無對策으로 연결됨으로써 오히려 통일의 길을 더욱 멀게해버리는 反統一的 姿勢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부단한 統一問題에의 관심과 함께 반드시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統一論議의 無理論性, 統一政策의 非現實性을 탈피할 수 있는 보다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統一理念의 定立과 統一方案의 確立이다.

종래의 통일논의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통일논의의 주제,

분석의 대상, 분석의 단위로서의 「統一」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는 「分斷」이라는 현실적 개념을 이제부터는 냉철히 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까지 통일논의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非現實로서의 統一이라는 분석단위에서 과감히 벗어나 現實問題로서의 分斷·紛爭을 새로운 분석단위로 하는 研究方法論上的 전환과 이에 기초한 統一政策의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에서 本 研究에서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諸統一論들 중 보다 구체적문제인 統一方案과 관련한 내용들을 Model 별로 나눈 뒤 각 Model들의 의미와 장단점, 한반도에의 적용가능성등을 개진함과 동시에 그 Model에 속하는 주장들을 소개·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 Model 별 주장들과 그에 대한 평가작업을 끝낸 뒤 本 研究者의 배달공동체건설론(檀國建設論)과 이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3 단계에 의한 배달민주공화국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研究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章에서는 研究의 目的과 範圍·方法을 밝혔으며, II章에서는 國家聯合Model의 의미와 특징, 聯邦國家Model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 Model에 속하는 이동화교수의 컨페더레이션案, 閔丙天교수의 民族聯合政府案, 李基遠교수의 南北共同委員會案, 張明奉교수의 南北韓聯合體案, 鄭用吉교수의 5段階統一方案, 金大中총재의 共和國聯邦案, 朴寬用의원의 한민족연합체案, 第6共和國政府의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의 내용들을 분석한 뒤 國家聯合Model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III章에서는 聯邦國家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그 개념을 설명하고 역시 이 Model에 속하는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設方案, 천관우씨의 複合國家案, 金種益교수의 聯邦國會構成案, 金永煥씨의 聯邦制統一案, 金重基씨의 聯

邦共和國創設案, 金洛中씨의 平和統一3次7個年計劃案, 文益煥목사의 聯邦制3段階統一案, 進歩政治聯合의 聯邦制統一案, 金浩鎭교수의 統一聯邦共和國案, 崔鳳潤교수의 過渡民衆聯邦共和國수립案을 분석하였다.

IV章에서는 꾸준히 논의되어온 中立化統一Model의 엄격한 의미를 개진하고 金三奎씨의 永世中立化統一案, 金龍中씨의 中立化統一案, 金錫吉씨의 民主中立化統一方案, 社會大衆黨의 永世中立化統一案, 黃仁寬교수의 韓半島中立化統一案, 鄭相九의원의 高麗永世中立國案, 기타의 中立化統一論등을 검토하였다.

V章에서는 段階的 交流·協力Model을 분석한 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金泳三총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金鍾必총재의 5段階統一方案, 趙 淳교수의 4段階經濟統合案, 崔聖俊·趙基洙교수의 3段階統一方案들을 살펴보았다.

VI章에서는 辯證法的 變革統一Model을 다루었으며 여기에서는 白基玩씨의 反外勢民衆解放統一論, 李在五씨의 自主·民主·統一論, KNCC의 「民族統一과 平和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 「해외동포회의」의 統一論, 한겨레민주당의 한겨레공동체案, 民衆의 黨의 反外勢民衆統一案, 社會民主黨의 聯合國家案, 吳忠一목사의 民族共同體建設案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諸 Model들을 비교·분석한 뒤 VII章에서는 분단극복의 새로운 통일론으로서 本研究者의 배달공동체건설론과 그에 따른 民族·民主·民生의 3대이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배달공동체형성 (THE KOREAN COMMUNITY) → 배달민주공화국수립 (THE UNITE STATE OF KOREA) : 南北聯立政府 → 배달민주공화국수립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 二元執政府制의 3단계에 의한 二元執政府制 배달民主共和國수립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VIII章에서는 몇가지 전망과 제언으로서 結論에 대신하였다.

사실 방안이 없어서 통일이 안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복잡한 통일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

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의 준비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요컨대 「韓民族」과 「朝鮮族」으로까지 나뉘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타과에 本研究에서 제시한 「배달공동체건설」論과 二元執政府制 배달민주공화국수립방안이 새로운 시각제시라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 간절하다.

目 次

I. 問題의 提起	9
1. 研究의 目的	9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10
II. 國家聯合 Model	11
1. 國家聯合의 意味	11
2. 國家聯合의 特徵	12
3. 國家聯合과 聯邦國家의 差異點	13
4. 國家聯合Model 統一論議	16
1) 이동화교수의 컨페더레이션案	16
2) 閔丙天교수의 民族聯合政府案	16
3) 李基遠교수의 南北共同委員會案	19
4) 張明奉교수의 南北韓聯合體案	21
5) 鄭用吉교수의 5段階統一方案	23
6) 金大中총재의 共和國聯邦案	25
7) 朴寬用의원의 韓民族聯合體案	27
8)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	29
5. 國家聯合Model 統一論議의 評價	32
3. 聯邦國家Model	33
1. 聯邦國家의 意味	33
2. 聯邦國家의 特徵	34
3. 聯邦國家Model 統一論議	35

1) 北韓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창 설방안	35
2) 천관우씨의 複合國家案	38
3) 金鍾益교수의 聯邦國會構成案	39
4) 金永煥씨의 聯邦制統一案	41
5) 金重基씨의 聯邦共和國창 설案	43
6) 金洛中씨의 平和統一 3次 7個年計劃案	45
7) 文益煥목사의 聯邦制 3段階統一案	47
8) 進歩政治聯合의 聯邦制統一案	49
9) 金浩鎭교수의 統一聯邦共和國案	50
10) 崔鳳潤교수의 過渡民衆聯邦共和國樹立案	53
4. 聯邦國家 Model 統一論議의 評價	54
IV. 中立化統一-Model	56
1. 中立化統一의 概念	56
1) 中立 (neutrality)	56
2) 中立化 (neutralization)	57
3) 中立主義 (neutralism)	59
2. 中立化統一-Model 論議	60
1) 金三奎씨의 永世中立化統一案	60
2) 金龍中씨의 中立化統一案	61
3) 金錫吉씨의 民主中立化統一方案	62
4) 社會大衆黨의 永世中立化統一案	63
5) 黃仁寬교수의 韓半島中立化統一案	63
6) 鄭相九의원의 高麗永世中立國案	65
7) 기타의 中立化統一論議	68

3. 中立化統一Model 論議의 評價	69
V. 段階的 交流·協力Model	71
1. 段階的 交流·協力Model 의 意味	71
2. 段階的 交流·協力Model 統一意識	71
1)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71
2) 金泳三총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方案	74
3) 金鍾泌총재의 5 段階統一方案	76
4) 趙 淳교수의 4 段階經濟統合案	77
5) 崔聖俊·趙基洙교수의 3 段階統一方案	78
3. 段階的 交流·協力Model 統一論議의 評價	79
VI. 辯證法的 變革統一Model	81
1. 辯證法的 變革統一Model 의 意味	81
2. 辯證法的 變革統一Model 論議	81
1) 白基玩씨의 反外勢民衆解放統一論	81
2) 李在五씨의 自主·民主·統一論	83
3) KNCC 의 「民族統一과 平和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4
4) 「해외동포회의」의 統一論	85
5) 한겨레 민주당의 한겨레공동체案	87
6) 民衆의 黨의 反外勢民衆統一案	88
7) 社會民主黨의 聯合國家案	89
8) 吳忠一목사의 民族共同體建設案	90
3. 辯證法的 變革統一Model 論議의 評價	92
VII. 分斷克服의 새로운 統一論 : 배달공동체건설론 (檀國建設論)	94

1. 새로운 統一理念의 必要性	94
2. 배달공동체의 意味	96
1) 태달의 概念	96
2) 배달공동체의 意味	100
3. 배달공동체건설론의 3大理念	103
1) 民族主義	103
2) 民主主義	104
3) 民生主義	104
4. 二元執政府制 배달民主共和國樹立方案	105
1) 제 1 단계 : 배달共同體 (THE KOREAN COMMUNITY) 형성단계	105
2) 제 2 단계 : 배달聯立民主共和國 (THE UNITE STATE OF KOREA) 수립단계 - 南北聯立政府	107
3) 제 3 단계 : 배달民主共和國수립단계 - 二元執政府制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109
8. 結 言	113

I. 問題의 提起

1. 研究의 目的

祖國統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드높은 가운데 새로운 차원에서의 통일논의가 擴大되고 있다.

既存의 통일논의가 통일의 當爲性이나 名分強調, 통일논의의 자유보장 등에 대한 것이 主流를 이루어왔던 데 비해 점차 통일방안이나 交流方案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政治圈에서 국회공청회등을 통해 각 政黨·社會團體·개별인사의 통일론 등을 公開討論하고 이의 接木을 試圖하는가 하면 民間團體에서도 直接 北韓과의 接觸을 주장하는 등 통일문제와 관련한 의견표출이 눈에 띄고 늘고 있다.

이에 따라 既存의 다분히 名分論的이며 추상적이었던 統一論에서 脫皮하고 과도단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병행됨으로써 한때 體制聯合이라는 새로운 概念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統一모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政府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새로운 統一方案을 통해 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 등 통일의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과도단계의 설정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통일모델을 提示하였고, 在野나 학생운동권 등에서는 「民衆主體의 中立化 聯邦制統一」에 점차 합의를 보이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外觀上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統一論議는 그것이 이론적 기초나 과학적 接近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선전적인 구호적 성격이나 현실성이 缺如된 이상론에 치우쳐 「말의 잔치」정도에 그치

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경우에 따라서는 祖國統一問題를 국내정치의 인질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分명한 현실이고 보면 문제의 深刻性은 더해진다.

이같은 統一論議는 論爭의 集積일 뿐 理論的 累積은 아니며 합의의 導出보다는 자기선전적인 분쟁만을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本研究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諸般 統一論議들 통일방안에 관한 주장들을 모두 모아 그 長短點과 한반도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收斂·包容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이상의 研究目的에 의해 本研究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통일방안과 관련한 논의들을 내용별로 國家聯合 Model, 聯邦國家 Model, 中立化統一Model, 段階的交流·協力Model, 辯證法的 變革統一Model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민족 전체에 反하는 武力統合Model은 除外하였다.

이어서 각 Model들의 概念的 정의와 함께 그 장단점을 理論적으로 구명한 뒤 각 모델에 속한 주장들을 分析하고 전체적인 Model의 한반도 적용가능성등을 평가하였다.

이상의 각 Model 별 분석이 끝나면 이들 주장들을 총점검한 최종수렴체로서 本研究者의 배당공동체 통일론과 이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3단계에 걸쳐 二元執政府制의 1民族 1國家 1體制를 완성하는 배달민주공화국건설방안을 제시하였다.

II. 國家聯合 Model

1. 國家聯合의 意味

國家聯合 (Confederation, Staatenbund) 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 즉 개별적인 國際的 人格 (International Personality) 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條約에 의해 결합하고 특정한 권한을 보유하는 共同機構를 가지고 새로운 法的 實體 (Juridical entity) 를 구성하는 國家結合形態이다.¹⁾

國家聯合은 여러 국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대외적으로 동일한 人格者로서 행동하기 위해 결합한 것으로 국제법상의 外交關係는 원칙적으로 각 구성국이 처리하고 중앙조직은 단지 예외적으로 조약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對外關係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國家聯合은 그 자체로서는 국가가 아니며 극히 制限된 범위내에서 국제법상의 人格을 갖는데 불과하다.

이처럼 國家聯合은 結合根據를 國際條約으로 하는 國際法上的 國家統合이며 結合主體는 완전한 國際法人格을 갖는 國家와 國家의 結合이고 結合國 상호간의 地位는 相互對等한 並列的 關係에 있으며 權利能力과 行爲能力面에서는 그 結合條約내용에 따라 行爲能力은 제한된다.²⁾

1) J.H.W. Verzijl,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Vol.2(Leyden, the Netherlands : Sijthoff, 1969), p.159 ; 柳炳華, 「國際法總論」(서울:一朝閣, 1985), pp.231~232 ; 裴載湜, “國家의 類型에 관한 研究”, 「法學」第26卷1號(서울:서울대法學研究所, 1985), p.100 참조.

2) 張明奉, “國際聯合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제33권 제2호(서울, 대한국제법학회, 1988), pp.29~30.

결국 國家聯合은 단일국가성을 가지지 않고 구성국간의 상호협의체적인 성격³⁾을 가지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경우가 보통이며 중앙조직의 권한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聯邦國家形態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特徵을 보인다.

2. 國家聯合의 特徵

國家聯合은 복수의 국가가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약에 의해 결합한 국가결합형태로서 ‘새로운 法律關係’를 형성하는 것일 뿐 ‘새로운 法主體’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國家聯合은 국제법상 국가간의 결합이므로 聯邦(Federation, Bundesstaat)과는 구별되며 保護國과 被保護國간의 保護關係와도 다르고, 구성국간의 대등한 결합이라는 점에서 從屬的 國家結合과도 개념을 달리한다.³⁾

이렇듯 國家聯合은 대내외적 권리와 행위의 행사에 있어 複雜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개념인데 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特徵들로 要約할 수 있다.

① 國家聯合 자체는 국제법상의 주체가 아니며 聯合構成國이 국제법상의 주체이다. 따라서 原則적으로 국가의 國際責任은 각 구성국이 진다.

② 國家聯合 구성국의 관계는 구성국간의 合意(條約 또는 規約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國家聯合의 中央政府가 構成國政府에 종속한다는 特徵을 가진다.

③ 構成國의 국민은 國家聯合 공동의 국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구성국의 국적을 가진다. 따라서 구성국 국민에 대한 국가의 外交的 보호권은 해당 구성국만이 행사한다.

④ 대내적 統治權은 전적으로 국가연합 구성국이 보유하는 바 국가연합의 공동기구는 구성국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고 각 구성국이 공동기구의 결

3) Ibid., p.29.

의를 수락하여 立法措置를 취할 때에 한해서 구성국 국민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⑤ 國家聯合은 구성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合議體로서 구성국의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공동의 결의에 의하여 연합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이 처리된다.

⑥ 國家聯合은 자신의 兵力을 가지지 않으나 국가연합이 구성국 이외의 제 3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각 구성국은 연합에 필요한 武力을 제공하여야 한다.

3. 國家聯合과 聯邦의 差異點

國家聯合 (Confederation)은 종종 聯邦 (Federation)과 비교되어진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국제법상 주체성의 유무 등 根本的인 문제등에서 부터 많은 차이점이 있다.

① 먼저 國際法의 主體라는 側面에서 볼 때 양자간에는 國家聯合이 그 자체로는 국제법의 주체가 아님으로써 國際的 人格 (International Personality)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聯邦은 그 자체가 국제법상 주체로서 國際的 人格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⁴⁾

② 結合의 根據면에 있어 聯邦은 '憲法'에 의함으로써 國內法에 근거하는 데 비해 國家聯合은 원칙적으로 국가간에 체결된 '條約'에 기반함으로

4) 이같은 점에서 聯邦은 '진정한 국가 (real state)'라 할 수 있으나 國家聯合은 그렇지 못하다.

J.G. Starke,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9th ed. (London : Butterworth, 1984). p.109.

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 Stevens, 1967), pp.56 ~ 57 참조.

써 國際法的 성격을 띤다. 5)

따라서 聯邦은 단일의 연방헌법에 구속되는데 비해 國家聯合은 연합 구성국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憲法을 갖는다.

③ 對內的 統治權의 문제에 있어서 聯邦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역정부 주민에게 직접적인 統治權을 행사하지만 國家聯合의 경우는 구성국만이 구성국의 주민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차이점을 가진다. 6)

④ 對外的 統治權과 관련하여서는, 聯邦이 원칙적으로 聯邦政府가 對外的 統治權을 보유하고 지역정부는 그렇지 못한 데 비해 國家聯合에서는 特定事項에 한해서만 對外的 統治權을 가질 뿐 구성국이 행사한다. 7)

⑤ 國籍問題에 있어 聯邦이 공통의 국적을 갖는데 반해 國家聯合의 國籍이 아니라 소속 구성국의 국적을 가진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外交的 보호권은 각 구성국이 갖는다. 8)

⑥ 兵力保有與否와 관련하여 보면 聯邦은 兵力을 보유함으로써 연방의 주민은 연방정부에 대해 병역과 納稅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國家聯合의 경우에는 각 구성국들이 자체의 兵力을 保有할 뿐 국가연합은 병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연합에서의 주민들은 각 구성

5) D.P. O'connell, International Law, 2nd ed. Vol.1 (London : Stevens, 1970), pp.295.

6) G.V. Glahn, Law Among Nations, 3rd ed. (New York : Macmillan, 1976), p.66.

7)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 Clarendon, 1973), p.79 ; M.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1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222 참고.

8) 張明奉, 「國家聯合事例研究」(서울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6), p.6.

국에 대해서만 兵役과 納稅의 의무를 가진다. 9)

⑦ 구성국간에 武力衝突이 발생할 시에 국가연합구성국 상호간의 武力鬪爭은 국제법상 戰爭으로 간주되지만 聯邦에서는 內亂이 된다. 10)

⑧ 國際法 違反行爲가 발생할 경우 聯邦은 자신은 물론 지역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國家責任을 지며 지역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데 비해 國家聯合의 경우는 해당 구성국이 국가책임을 질 뿐 국가연합은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⑨ 安定性에 있어 聯邦은 안정성을 지닌 영구적 결합인 데 비해 國家聯合은 안정성을 缺한 잠정적 결합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역사상으로도 단명한 경우가 많거나 聯邦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國家聯合은 국가결합을 형성하는 구성국에 국제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고 국가결합 자체에는 聯邦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며 구성국에 국제법상 완전한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이 있는 국가결합인 人的 同君聯合(personal Union)과 國際機構(International Organization) 등과 구별된다.

또한 國家聯合은 각 구성국이 독자적으로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併合(annexation) 및 合併(analgamation)과 다르며 구성국간에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同盟(Alliance)과도 차이가 있다. 12)

9) R. Aron, Peace and War(New York : Praeger, 1966), p.758.

10) Ibid.

11) J.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Oxford : Clarendon, 1979), p.294.

12) 張明奉,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 제2호(서울: 대한국제법학회, 1988), pp.29~30.참고.

4. 國家聯合Model 統一論議

1) 이동화교수의 컨페더레이션案

이동화教授는 명실상부한 통일적 민족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南北의 兩體制를 統合·同質化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우선적 단계로서 ‘컨페더레이션’을 제안하였다.¹³⁾

즉 南北이 접근과 收斂의 과정을 거쳐 완전한 同質化를 이룩한 후에 통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百年河青’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선 일종의 컨페더레이션의 형태로서 南北韓을 결합한 연후에 점진적인 同質化를 促進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李교수는 또 이같은 과도적인 형태는 통일문제의 현실적해결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4大國에 의한 한반도의 中立化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李교수는 민주사회주의의 理想的 기반위에서 통일을 이룩하고 美軍은 한민족통일문제의 근본적 합리적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諸措置를 선행적으로 취한 이후에는 撤收해야한다고 주장하였던 바 李교수의 統一論은 민주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일과 한반도의 中立化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特徵을 찾을 수 있겠다.

2) 閔丙天교수의 民族聯合政府案

閔丙天교수는 통일방안으로서 總選指向의 民族聯合方案 2가지를 제시하였다.

가) 聯合政府樹立案(第1案)¹⁴⁾

13) 이동화, 「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서울: 민주사회주의연구회, 1984), pp.6~7.

14) 閔丙天, 「90년대를 전망한 우리의 통일방안연구」(서울: 日海研究所, 1988), pp.27~29.

이는 統一政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南北總選舉로 수립함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잠정적으로 과도적인 聯合政府를 세워 중간형태의 부분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南北總選을 指向하자는 것이다.

聯合政府는 과도적 일시적인 南北協力の 부분통일정부의 성격을 가지는데 南北人口 비례로 南과 北의 국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民族聯合會議에서 수립된다.

聯合國家의 名稱, 법체계, 대표자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이 민족연합회의는 분야별로 경제사회연합분과위, 외교군사연합분과위, 교육문화연합분과위, 통일협의분과위 등의 분과위를 둔다.

과도적인 聯合政府가 존속하는 동안 南北에는 별개의 정부와 체제가 인정되며 각자의 국적도 인정되지만 南北은 다음과 같은 8가지 政策方針을 따라야 한다.¹⁵⁾

- ① 南北韓은 서로 다른 정치 및 社會制度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전국도에 대한 종합적 개발에 協力한다.
- ② 南北間의 自由往來와 交通·通信의 연결 및 전분야에 걸친 交流의 協力和 연합을 실시한다.
- ③ 연합정부와 南北雙方政府는 긴장완화와 軍縮에 노력하며 休戰線一帶에 민족연합경비대를 공동으로 편성 배치하여 충돌을 방지한다.
- ④ 南北雙方은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휴전협정을 불가침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자주적으로 평화를 확보한다.
- ⑤ 南北은 각각의 독자적인 대외활동과 국제행사에 참여하지만 민족연합회의의 결정에 따라 연합정부가 그것을 조정하며 그 일부를 행사한다.
- ⑥ 연합정부와 南北雙方政府는 해외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을 위해 공

15) Ibid., p.28.

동 노력하고 협력한다.

⑦ 남북정부가 각각 체결한 현존의 국제조약은 존중하되 외국문제등 조정이 필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⑧ 南北雙方政府和 聯合政府는 총선에 의한 단일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이상의 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¹⁶⁾

- 1 과도연합정부수립안과 연합 및 협력방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으로 확정한다.
- 2 南北한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과 민족연합회의 구성을 위해 남북동수로 聯合政府創設委員會를 구성한다.
- 3 統一을 촉진하고 南北韓의 모든 懸案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조속히 개최한다.

나) 民族聯合會議案(제2안)

閔丙天교수는 잠정적 부분통일방안으로써 연합정부수립안이 여의치않을 경우 좀 더 느슨한 방법으로서 民族聯合會議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자는 民族聯合會議創設方案을 제시하였다.¹⁷⁾

따라서 이 案은 민족연합회의가 대외관계 군사문제등을 비롯하여 南北間의 협력과 통합 및 총선에 의한 단일정부의 창설문제등을 토의 결정하는 최고기구라는 것외에는 聯合政府樹立案과 거의 같다.

즉 민족연합회의의 대표는 남과 북의 국회에서 同數로 선출하며, 분과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총선통일까지 별개의 정부와 체제가 존속한다는 등 그 구성과 운영, 그리고 연합적 협력방침에 있어 연합정부수립案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民族聯合會議의 창설과 연합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

16) Ibid., pp.28 ~ 29.

17) Ibid., pp.29 ~ 30.

천조치와 관련하여 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체결과 南北韓當局最高責任者 會談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역시 연합정부안과 동일하며 단지 연합정부창설위원회 대신 민족통일협의회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李基遠교수의 南北共同委員會案

李基遠교수는 통일의 과도적기구구성방법으로서 南北共同委員會案과 國家聯合案을 제시하였다.¹⁸⁾

가) 南北共同委員會案

이는 南北이 서로의 政治體制와 社會制度의 독자성을 尊重하되 理念과 體制의 차이를 초월하여 相互協力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며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包括적으로 協議·해결하는 협상조절기구로서 南北共同委員會를 設置·運營하자는 것이다.

南北共同委員會는 南北의 정부당국 및 국회대표 각기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하되 윤번제로 하고 민족화합, 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南北同數로 하며 위원장은 매 회기시 윤번제로 한다.

1개월 이내의 회기로 4월과 10월 연2회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회기는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臨時會議를 개최할 수도 있다. 분과회의는 雙方合意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南北共同委員會의 事務處理를 위해 南北은 각기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업무의 상호연락을 위해 5명 이내의 상주연락대표부를 서울과 平壤에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구성·운영되는 南北共同委員會는 平和的인 민족통일안, 민족통일협의회 구성방안, 緊張緩和措置의 강구, 군사적 對峙狀態의 해소방안, 정치·經濟·

18) 李基遠, 「過渡統一政策機構에 관한 研究」(서울: 일해연구소, 1988) 참고.

사회·문화 등 諸分野에서의 南北交流와 협력방안, 이산가족의 재회사업, 각계 인사의 상호방문과 교류방안, 기타 합의에 의해 제기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나) 國家聯合案

이같은 南北共同委員會案을 제시한 제2안으로서 南北이 하나의 통일된 민주국가건설을 지향하며 世界各國과의 선린友好關係 增進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공동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상호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조약을 締結하고 과도적 조치로서 國家聯合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國家聯合은 최고기관으로서 南北頂上會議을 두며 ①南北頂上會議는 南北韓 관계개선과 협력에 관한 주요정책을 협의 결정하고 ②남북간의 異見과 마찰을 최종적으로 조정한다. ③頂上會議는 연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의장소는 서울 평양을 교대로 한다.

南北頂上會議는 아래에 南北合同關係會議를 둔다. ①合同關係會議는 원칙적으로 外交·國防·經濟分野 關係로 구성되며 의제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해당 각료를 추가 참가시킬 수 있다. ②합동각료회의는 南北交流·協力 등 기본조약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협의를 비롯해서 정상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시책마련, 南北協力實務委員으로 부터 제기된 사안의 협의 및 기타 중요사항들을 협의 결정한다. ③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가 끝난 후 적어도 15일 안에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장소는 원칙적으로 판문점으로 하되 합의에 의해 바꿀수도 있다.

合同關係會議밑에는 南北協力實務委員會를 설치한다.

①實務委員會는 공동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南北韓 각기 10명내외로 구성하고 ②판문점에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며 雙方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③委員會는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위임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상정할 議案을 협의하는 기능을 하며 ④이를 위해 판문점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한다.

南北쌍방은 각료급대표로 서울과 평양에 常駐連絡代表部를 운영한다.

이상의 두가지 案을 제시한 李교수는 양자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과도적조치로서는 南北共同委員會案이 보다 統一指向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張明奉교수의 南北韓聯合體案

張明奉교수는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각기 상대방의 현존 정치 체제·사회제도·독자성을 상호존중하면서 南北關係를 잠정적으로 相互共存的이며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시킨 새로운 南北關係를 설정·유지하는 방안으로서 南北韓聯合體 (Korean Confederation) 案을 제시하였다.¹⁹⁾

張교수는 南北韓聯合體統一方案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²⁰⁾

①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존중하며 平和공존關係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信賴를 조성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완전한 통일의 기반을 構築하기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國家聯合」의 결합체가 적절하다.

② 남북한 모두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족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南北韓聯合體案이다.

③ 南北韓은 現存의 이념과 사상제도를 서로 인정하면서 통일에 접근하려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南北韓聯合體案이다.

19) 張明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제 33 권 제 2 호 (서울 : 대한국제법학회, 1988), pp.43 ~ 49 참고.

20) Ibid., pp.44 ~ 45.

④ 北韓이 主張하는 연방제案은 남북 쌍방의 현재제와 사상을 인정하고 쌍방간에 공동기구를 설치하여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국가연합의 형태를 갖추자는 것인 바 이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이 南北韓聯合體案이다.

⑤ 남북 쌍방이 그동안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외한 기구들의 기능이 국가연합의 調節機構의 그것과 유사하다.

⑥ 南北쌍방이 南北聯合體를 결성하기로 상호간 통합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며 統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완전한 統一國家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⑦ 남북한연합체의 기본성격은 완전한 통일국가 형성까지의 과도적인 중간단계의 결합체이다.

南北韓聯合體案의 제안이유를 이렇게 제시한 張교수는 남북한 聯合體의 결성은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적 조약의 성격을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南北이 잠정적 내적특수관계임을 밝히는 「남북한연합헌장」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南北韓聯合憲章」의 구성골격은 다음과 같다.²¹⁾

①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연합을 결성하였으며 연합의 기본성격은 완전한 통일국가형성까지의 과도적 중간단계의 결합체임을 밝힌다.

② 남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적 주체성을 가져 외교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수행할 수 있으나 민족적차원과 통일지향적차원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한다. 대내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남북은 서로의 이념과 제도를 존중하며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상호교류

21) Ibid., pp.45 ~ 46.

와 협력함으로써 信賴를 조성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간다.

④ 南北韓聯合體의 공동기구인 쌍방의 공식적인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을 둔다.

⑤ 연합기구의 권한은 각 기구들의 성격에 따라 통일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협의·결정사항의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 또한 필요하다.

⑥ 연합현장에는 남북한의 관계가 상호 외국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시까지의 잠정적인 내적특수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결국 張교수의 南北韓聯合體案은 1民族 2體制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대내적으로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간의 문제라는 분단국 특유의 二元的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라 하겠다.

5) 鄭用吉교수의 5 단계통일방안

鄭用吉교수는 공존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단계론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²²⁾

① 준비단계 (한국내 국민화합단계)²³⁾ :

이는 남한 스스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과 남한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공존에 임하고자 함이다.

對北宣傳·誹謗放送中止 및 북한정규방송청취허용, 학술모임·체육행사등에 北韓人 入國許容, 대학이나 연구소에 북한신문허용, 外國人의 판문점통과·往來保障, 공산권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의 韓國 自由往來保障, 남북교류나 北方外交에 반하는 관계법령의 개·폐지, 友邦國들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또는 비군사

22) 鄭用吉, 「分斷國統一論」(서울: 고려원, 1988), pp.358 ~ 376 참고.

23) Ibid., pp.361 ~ 362.

적 물자교역 지원, 국제무대에서 남북간의 對決外交 終熄, 남북군사회담 당사자 자격획득을 위한 韓美聯合司令部 作戰指揮權 引受, 남북교차승인 등의 작업들이 이에 해당되며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도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간 그리고 國民和合을 이룬다.

② 共存初期段階²⁴⁾ :

南과 北의 불신의 壁을 넘기위해 남북한이 합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단계이다.

상주연락대표부설치, 離散家族들의 生死確認·서신왕래·상봉주선, 상호교역, 교역품목선정, 南北 文化·藝術交流, 고대유물 교환전시, 京·平축구전등 교환경기, 南北大學生들의 「조국순례대행진」과 體育交換競技, 기자들의 取材活動保障, 經濟協力, 南北經濟協力委員會設置, 자연자원개발, 南北共同漁撈區域 設定,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되 특히 經濟交流가 바람직한 것이다.

③ 共存成熟段階²⁵⁾ :

이 단계는 공존초기단계에서의 각종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체, 不可侵條約締結, 상호군축, 주한미군철수, 핵무기철폐, UN同時加入과 함께 남북 모두 反外勢 自主化運動과 反獨裁民主化運動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다음의 국가연합 또는 연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북한에는 革命的 충동감이 사라지고 남한에는 진정한 민주적 안정이 이루어져 남북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④ 過渡體制的 設定단계²⁶⁾ :

24) Ibid., pp.362 ~ 366.

25) Ibid., pp.366 ~ 369.

26) Ibid., pp.369 ~ 372.

진정한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단계로서 國家聯合 共營邦 또는 聯邦制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정치사상·경제체제·정치제도가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國家聯合이나 共營邦이 더욱 合理的일 것이다.

⑤ 聯邦制로의 통일과 非同盟中立國宣布²⁷⁾ :

제 4 단계에서 採擇된 어떤 과도체제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는 체제는 聯邦이며 연방정부가 구성되면 周邊 4 強의 동의로 非同盟中立을 선포한다.

결국 鄭교수의 5 단계 통일론은 韓國社會의 民主化를 바탕으로 統一指向事業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北韓의 개방화를 유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하자는 것인 바 非同盟中立 聯邦으로의 통일을 최종적으로 보았다는 데 큰 特徵이 있다하겠다.

6) 金大中총재의 共和國聯邦案

金大中총재의 統一方案은 ①平和共存 → ②平和交流 → ③平和統一의 3 단계 평화통일방안과 이의 과도적 중간단계로서의 共和國聯邦制로 대표할 수 있다.²⁸⁾

① 먼저 平和共存의 단계란 전쟁의 抑制와 긴장완화에 대한 확고한 조치로 南北韓 平和共存體制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전환, 주변 4 強의 보장이나 UN 동시 가입을 통한 南北不可侵協定締結, 단계적 주한미군철수, 군작전권반환등을 실시

27) Ibid., pp.372 ~ 376.

28) 김대중, “나의 입장, 나의 포부”, 「月刊朝鮮」1985년 8월호, pp.214 ~ 233.

박 실, “김대중씨의 통일방안은 이렇다”, 「민족지성」1988년 4월호, pp.102 ~ 109.

조순승, “평화민주당의 통일정책”, 「민족지성」1989년 4월호, pp.151 ~ 154. 각각 참고.

한다.

② 平和交流의 단계는 남북간의 증오와 불신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의 격차를 緩和함으로써 동질성과 信賴性을 회복하는 단계이다.

書信往來, 가족 친지방문등의 인도적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학술 문화 체육 관광 등 비정치적 분야의 交流를 거쳐 물자교환, 통상거래 등 경제분야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자는 것인 데 이를 위해 南北責任者會談을 연례화시키고 定例南北閣僚級協議機構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③ 이상의 平和共存, 平和交流의 단계를 거치면서 남북사이의 불신이 해소되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平和統一의 단계이다.

그런데 이같은 3단계 平和統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중간형태로서 金大中씨는 共和國聯邦制를 제시한다.²⁹⁾

남한에서의 민주정부수립·北韓의 赤化野慾 포기와 美·日·中·蘇의 공동평화보장선언의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있는 이 공화국연방은, 남북이 서로 양지역에 理念과 체제를 달리하는 완전한 독립정부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내정불간섭을 약속한 상태에서 상징적인 中央聯邦機構를 설립할것을 내세운다.

이 中央聯邦機構는 각 독립정부위에 양측 정부의 위임사항에 관해서만 극히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상징적 기구로서 문화 학술 체육 언론 경제 인도적 교류를 수행하는 일종의 國家聯合的 성격을 갖는다.

즉 南北은 각기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민간대표로서 聯邦議會를 구성하는데 연방의회는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회복, 평화체제의 증강

29) 김대중, op.cit., pp.217 ~ 218.

과 완전통일에의 길을 모색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1聯邦 2獨立政府體制 밑에서 남북은 공존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면서 상호이해와 조정을 바탕으로 국방·외교권까지 그 권한을 中央政府로 이관하여 완전한 통일정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다음 세대들의 몫으로 남긴다.

결국 金大中총재의 共和國聯邦案은 상징적 수준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것으로서 최종 형태에 있어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연방공화국제의 채택가능성도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7) 朴寬用의원의 韓民族聯合體案

朴寬用의원은 1民族 1國家 1體制의 완전통일을 위해서 國家聯合의 형성은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³⁰⁾

自主·平和·民主의 3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朴의원은 이제까지의 ‘信賴回復 → 점진적교류 → 현안문제거론’이라는 기본도식에서 과감히 脫皮하여 신뢰회복, 인적 물적교류, 정치군사회담등의 문제들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역동적·총체적 접근방식을 주장한다.

먼저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의 제1과정은 통일로 가기 위한 整地作業으로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즉 남북간의 상호신뢰 및 민족동질성회복과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은 인적·물적교류의 획기적 확대 및 군사·정치적 현안의 동시 해결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체, 상호비방중지, 실질적인 군축단행,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再檢討를 실시한다.

30) 박관용,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 「민족지성」 1989년 4월호, pp.142 ~ 147.

이러한 가운데 信賴回復 분위기가 조성되면 체육·문화교류, 서신왕래, 친지방문, 성묘단교류, 취재·보도·관광의 개방, 교통통신의 자유이용, 방송·청취의 開放과 交流, 技術提携, 직접·합작투자추진, 직접교역의 확대, 민족사 복원운동의 공동전개, 제반 學術交流 등 각종 교류와 貿易, 共同事業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평화구조가 조성되면 제2과정으로 南北은 상호공영과 평화공존의 대원칙에 따라 남북쌍방이 참여하는 한민족연합체를 구성한다.³¹⁾

한민족연합체는 남북한 지역정부에 대해 내치권·군사권·외교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남북쌍방지역정부간의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매개체로 역할함으로써 民族共同體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해 한민족연합체의 실질적 상설대표기구이며 對外的으로도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한민족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민족위원회’는 남북한의 지역정부가 각기 쌍방의 理念과 體制를 인정하는 相互內定不干涉을 원칙으로 南北同數의 의원들로 구성하되 각 정부의 副總理級 각료를 공동위원장으로 두며 공동위원장은 각 지역정부의 대표로서 인정된다.

한민족위원회는 남북쌍방정부의 諸般意見들을 교류하며 한민족공동체완성노력을 지원·감독하는 데, 특히 人的·物的交流는 물론 지속적인 軍縮協商을 매개하여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군축을 도모한다.

한편, 한민족연합체는 ‘한민족회의’도 구성할 수 있는데 한민족회의는 남북한의 각 地域으로 부터 선출된 동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한민족연합체의 존속여부 및 한민족위원회의 活動狀況에 대해 의결·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31) Ibid.

朴의원은 이같은 국가연합성격의 한민족연합체를 통해 窮極的으로 1民族 1 體制 1 國家의 완전통일된 한민족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이같은 朴의원의 한민족연합체안은 완전한 통일국가건설을 위한 조건과 첫단계 제시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

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大統領은 1989년 9월 11일 國會特別演說에서 제6공화국의 새통일방안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³²⁾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 KNC)은 과거 정부의 통일방안이 보여왔던 중간과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特徵을 찾을 수 있다.

自主·平和·民主를 통일의 3大原則으로 해서 의회민주주의국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되 民族共同體의 개념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南北對話推進(정상회담) → 남북연합단계 → 통일민주공화국실현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통일론이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 먼저 제1단계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 민족공동체현장)을 채택하는 단계이다.

민족공동체현장은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할 때 까지 南北關係를 규율하는 기본장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평화와 통일을 위한 南北韓 기본관계,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남북연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는다.

이는 南北頂上이 합의, 확정하고 각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동시에 공포함으로써 발효하게 된다.

② 南北頂上會談에서 민족공동체현장이 채택되면 통일국가의 중간과정으로서 남북 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단계로 들어간다.

32)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서울:국토통일원)참고.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각자의 外交·군사권을 保有한 主權國家로 남지만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밑에 연합의 형태로 묶어짐으로써 暫定的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특수한 概念이다.

따라서 南北聯合은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교과서적 개념과는 다르며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국가가 하나의 생활공간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지향해가고 있는 유럽공동체(EC)나 노르딕연합체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남북연합에는 크게 4개의 機構가 있다.

南北頂上會議(The Council of Presidents)는 南北閣僚會議와 남북평의회에서 협의한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기구이다.

南北閣僚會議(The Council of Ministers)는 南北 쌍방 總理를 공동의장으로 南北 각기 10명 내외의 각료급으로 구성하며 남북간의 諸般 현안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그 실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각료회의는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의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재결합문제,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浪費 방지 및 해외동포의 權益伸張 문제, 남북사회개발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추진문제, 민족문화창달문제, 공동번영의 경제권 형성문제, 군사적 信賴構縮과 軍費統制問題, 休戰協定體制의 平和體制로의 대체 문제 등을 협의한다.

南北平議會(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는 100명내외의 南北同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諮問, 統一憲法基礎 및 통일실현 방법과 절차마련등의 기능을 하는데 통일국가의 政治理念·國家形態·國號 등을 논의하고 대외정책의 基本方向이나 정부형태·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시기 절차등을 토의 합의한다.

共同事務處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지원,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를 관장하고 서울과 평양에 常駐連絡代表部를 파견한다.

이같은 南北聯合實現을 위해 비무장지대내인 경기도 장단읍에 평화구역을 설정, 南北聯合機構의 건물과 각종 회의장소를 설치하는 한편 南北間 多様な 交流와 協力の 통로를 제공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諸般施設들을 건설해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指向하는 시범지역으로 기능토록 한다.

③ 南北平議會에서 마련한 統一憲法草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단일 민주국가이며 국회는 지역대표성을 띠는 上院과 국민대표성을 띠는 下院의 兩院制로 구성한다.

통일국가의 정책기조는 민족성원전체의 참여와 機會가 균등하게 보장되며 자유로운 주의·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기여, 모든 나라와 善隣友好關係維持등으로 한다.

統一國家의 정책기조는 민족성원전체의 참여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며 자유로운 主義·主張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世界平和寄與,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유지등으로 한다.

이처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최종단계에서 민주적방식과 절차에 따른 통일헌법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統一民主共和國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기본 骨格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간단계적 성격의 통일과도체제인 남북연합의 概念을 도입하는 점에서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민족공동체회복이라는 民族統一을 통해 국가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한 論理性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나 첫단계를 北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南北頂上會談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窓口多元化를 주장하는 재야측에서 대통령의 핵심적 역할수행을 반대하고 있

다는 점 등에서 이를 어떻게 如何히 해결해나가느냐에 따라 그 실현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 國家聯合 Model 統一論議의 評價

國家聯合 Model 은 80년대 중반이후 부터 聯邦制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조금씩 논의되어 오다가 第6共和國들이면서 政府側에서 體制聯合등 과도단계논의가 本格化되면서 크게 관심을 모으게 된 Model 이다.

國家聯合 Model 은 오랜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의 國家狀態化」된 南北 사이의 異質感과 갈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타당성과 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Model 은 이름자체에서도 나타나듯이 國家간의 연합형식을 취함으로써 2개 국가화의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指摘되고 있다.

엄격한 의미의 국가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국가승인작업이 있어야 하며 그럴경우 분단의 合法化라는 비난과 한반도내의 유일정통성 논리에도 수정을 가해야하는 동시에 현재 南北이 각자의 헌법에 表記하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영토에 대한 主權主張에도 변화가 와야한다.

이렇듯 많은 작업들이 原則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남북이 특수한 국가연합 Model 방식을 합의한다면 즉 법적으로는 상호 국가로서 인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실체 정도를 인정하되 실질적으로는 最大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양보와 합의를 기할 경우 어떤 Model보다도 적용가능성이 큰 Model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어도 理論적으로나 현실적으로 1民族 1國家 1體制의 最終統一國家로 가기위한 첫 단계로서의 적용가능성이 가장 큰 Model 이라 하겠다.

Ⅲ. 聯邦國家 Model

1. 聯邦國家의 意味

聯邦國家(Federal State)는 複數의 支分國으로 구성된 國家로서 중앙정부 조직이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가지는 반면, 연방의 구성국정부조직은 극히 제한된 사항에 관해서만 국제법상의 능력을 行使할 수 있는 複合的 國際人(Composite International Persons)의 한 형태이다.³³⁾

聯邦國家는 그 자체의 정부기관을 갖고 연방구성국과 연방구성국의 주민에게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國際人인 것이다.

대부분의 연방국가에서 대외정책은 聯邦政府에 의해 수립·수행되며 연방국가만이 戰爭을 수행하고 강화하며 정치적 군사적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데 비해 연방구성국은 이같은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³⁴⁾

따라서 연방국가는 국제법의 觀點에서 볼 때 ‘진정한 국가’인 것이다.³⁵⁾

이같은 연방제는 두 주권국가의 단일적 통합이 어려울 때 각각의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채택할 수 있는 국가통합방법의 하나로서 정치적 제도의 統攝을 경제·사회·문화 등 非政治的 요소에 선행시키는 통합형태라 할 수 있다.

33) I. Bernier,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Federalism(London: Longmans, 1973), p.13.

W.L. Gould,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New York: Harper, 1957), p.200 참고.

34) A.E. Evan, "Self Executong Trea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I.L., Vol.30, 1953, pp.181~182.

35) Ibid., p.67.

2. 聯邦國家의 特徵

연방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權力關係가 일반적으로 對等性의 원칙에 있다.

연방국가건설에 있어 연방구성국들이 주권을 연방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연방정부가 對內外的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主權을 행사한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완전히 上下關係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한계문제가 쉽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방국가에서는 聯邦政府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명백히 표기하는 성문헌법을 지닐 수 밖에 없는 特徵이 있다.³⁶⁾

다음으로 聯邦國家는 지방정부의 권위보장을 위해 支邦政府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上院을 둠으로써 양원제의회를 運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⁷⁾

연방체제를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지역단위를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가는 또 근본적으로 劃一性보다는 多樣性을 중시하기 때문에 非中央執權化(non-centralization)의 특징을 갖는다.³⁸⁾

이와 함께 연방국가는 일반적으로 權力을 지역적으로 分配하는 특징을 보인다.

宗教·이데올로기등을 기준으로 하는 聯邦制度 理論的으로는 가능하지만 역사상 실재한 연방제도 모두 지역을 기초로 하여왔던 것이다.

36) D.J. Elazar, "Federalism", in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7, 15thed, (London: Helen Hemingway Benton, 1980), p. 205.

37) U.K. Hicks, Federalism: Failure and Success (London: Macmillan, 1978), p.175.

38) D.J. Elazar, op.cit., p.205.

즉 지역을 기초로 각기 상이한 집단의 대표에 대해 中立과 平等 (neutrality and equality)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다.³⁹⁾

이같은 특징들 외에도 연방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聯邦政府和 地方政府 사이에 마찰이 생길 경우 그것을 중재할 최고연방법원이나 헌법재판소등이 성문헌법이 반드시 明記되어 있다.⁴⁰⁾

결국 연방국가는 단방제적인 것도 그렇다고하여 분리주의적인 것도 아닌 것으로서 연방창설에 따른 既得利權이나 既得權의 축소등에 따른 반발등으로 인해 瓦解되기 쉽다는 弱點도 함께 가지고 있으나 다양성을 重視하는 複合社會에 보다 融通性을 기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모델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3. 聯邦國家Model 통일논의

1) 北韓이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設 方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방안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設方案이다.

그러나 北韓이 1960년 이후 줄기차게 聯邦制를 주장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의 그것이 각각 다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에 처음으로 南北聯邦制를 거론했는데⁴¹⁾ 이때의 남북연방제案은, 연방제하에서 남북 두 정부의 독자적 정부활동이 보장되며 연방의 기

39) 金明基, 「남북한연방제통일론」(서울: 탐구원, 1988), p.26.

40) D.J. Elazar, op.cit., p.206.

41) 북한은 1960년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을 통해 최초로 남북연방제창설을 제안하였다.

이 한 위음,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上」(서울: 온누리, 1989), pp.109 ~ 115.

능은 남북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과도적인 통일형태라고 스스로 밝힘으로써 국가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후 1973년에는 高麗聯邦共和國案을 다시 제의하였는데, 이는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조치로 남북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존속을 인정하고 두 政府의 독자적인 정부활동을 계속하면서 南北同數의 대표로 조절기구를 만들어 이로 하여금 南北關係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이 때의 주장역시 분명히 국가연합이지 연방제가 아니었으며 과도적 단계임을 밝히고 있었다.

이같은 北韓의 高麗聯邦共和國案은 1980년에 들어서면서 ‘民主’가 추가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전제조건이 보다 강화되고 연방제 과도형태가 아닌 最終形態로 못박음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된다.⁴²⁾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남한에 대해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 ① 反共法·國家保安法등의 폐지와 사회민주화실현
- ② 한국내 모든 政黨·社會團體 및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③ 유신체제청산과 「민주정권」으로의 교체
- ④ 北韓과 美國간의 平和協定締結과 주한미군철수
- ⑤ 미국의 두개 한국정책저지와 內政干涉中止 연방형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³⁾

42) 북한은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을 제의하였다.

이 한 엮음,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下 (서울: 온누리, 1989), pp.615 ~ 627.

43) Ibid.

① 남과 북은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쌍방이 同等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며 그 밑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② 南北同數의 대표와 적당수의 海外同胞代表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南北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단행토록 한다.

③ 최고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聯邦常設委員會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합작·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의 방위문제·교역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諸般分野에서 南北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한다.

④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南北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 각당 각과 각계각층의 의사를 尊重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자기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며 어떠한 政治軍事的同盟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않는 중립국가로 된다.

이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案은 10개의 시정방침을 提示하고 있다.⁴⁴⁾

- ① 모든 分野에서의 自主性의 확고한 견지와 자주적인 政策實施
- ② 전지역과 모든 분야에 걸친 民主主義 실현과 民族大團結圖謀
- ③ 南北의 경제적 합작·교류의 실시와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보장
- ④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의 南北交流·협조 실시와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 ⑤ 교통·체신의 연결과 전국적범위에서의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44) Ibid.

보장

- ⑥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勤勞大衆과 全體人民들의 生活安定圖謀와 복리증진
- ⑦ 군사력대치상태해소와 민족연합군조직
- ⑧ 海外同胞들의 민족적권리와 利益保護
- ⑨ 統一이전에 맞은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統一的 保障
- ⑩ 全民族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애호관계발전과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實施

이상 살펴본바 北韓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案은 이전까지의 연방제案과는 달리 연방제를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非同盟中立을 공식表明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과 함께 영문표기에 있어서는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라고 표기함으로써 국가연합 (Confederation) 임을 標榜하고 있어 개념적인 모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論理的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2) 천관우씨의 복합국가論

천관우씨는 7.4 共同聲明 直後 統一方案으로서 複合國家論을 제시하였는데 연방이나 國家聯合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확한 概念은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보아 느슨한 형태의 연방으로부터 시국하여 보다 큰 형태의 연방 형태로 간 다음 변화를 기다려 다시 단일국가를 지향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즉 그는 複合國家란 두 개 이상의 政權이 그대로 결합해서 한 국가를 형

45) 천관우, “민족통일을 위한 나의 제언”, 「창조」 1972년 9월, 思想界, 「장준하문집」(서울:사상계, 1985), pp.377 ~ 380. 참고.

성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자신의 복합국가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던 것이다.

‘複合國家라는 것은 아주 막연하지마는 양쪽이,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아마 처음에는 결합이라든가 좀 약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겠지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놓고 점차 시간을 뒤가면서 양쪽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혹은 국제정세 혹은 세계사조의 變化, 이런 것을 통해서 기다려가면서 漸進的으로 이해할 것은 하고 이해 못할 것은 못하고 그러면서 단일국가를 추진해나가는 그런 方案이다.’

그러나 천관우씨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어온 어떤 복합국가의 형태도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기가 어렵고 실현성도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構想해야 할 複合國家라는 한민족의 적극적인 역량에 의해서, 創造的인 역량에 의해서 새로이 역사상 처음 나타나는 그러한 複合國家여야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천관우씨는 또 연방제와의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연방이란 것도 지금까지 있어 온 국가형태로서는 복합국가의 한 형태라고 전제한 뒤 당면한 민족의 活路가 열린다면 누가 먼저 발설했느냐 北의 主張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의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복합국가론이 반드시 연방제라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부분 脈을 같이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3) 金鍾益교수의 聯邦國會構成案

在美政治學者인 金鍾益교수는 1981년의 한 세미나에서 聯邦制案은 몇 가지 선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南北 雙方的 문제점과 主張을 包括시킴과 동시에 구체안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하여 聯邦制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주장하였다.⁴⁶⁾

金교수는 그 선행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指摘하였다.

① 연방제는 정치적 統合이 아니라 聯立關係, 平和的交流, 相互補完關係등의 성격을 띤 南北雙方의 정치적 理念的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相互信賴를 회복시키는 장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방제는 반드시 기구로서 制度化되고, 그 성격과 기능, 양측 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관계등이 명문화된 성문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연방체란 이미 存在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北韓이 먼저 제안했다고 해서 이를 赤色化의 手段으로만 생각하는 선입관은 버려야 한다.

③ 연방제실천에는 먼저 聯邦國會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태도와 의지가 중요하다. 이들은 서로를 법적으로 승인할 수도 있는 양보의 태도와, 權力과 理念의 차이를 조화시킬 意思, 반대세력을 說得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金教授는 이상의 先行條件과 함께 연방국회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① 우선 實務者 會談의 추진을 통해 쌍방의 우려를 해소하고 政治的利用도 배제하는 동시에 스포츠·문화·학자교류등의 비정치적교류도 並行함으로써 분위기를 조성에 기여한다.

② 연방국회 준비를 위한 常設 常任委員會를 조직하고 이곳에서 상호 內政不干渉, 독자성보장 문제등을 포함하는 聯邦憲法 및 연방국회 구성초안 등을 마련한다. 최종단계에 정상회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연방국회의 대표자 선출과정에서는 쌍방의 독자성이 존중되는 동시에 어

46) 金鍾益, “한국통일정책의 재고와 모색”, 「제4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서울: 한국정치학회, 1981), pp.303 ~ 316.

떠한 전제조건도 주장되어서는 안된다.

④ 국회의 운영과 의사결정등은 대표에게 전권이 일임되어야 하고 常任委員會는 반드시 설치하며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함으로써 정치성을 排除한다.

⑤ 토의의 원활화와 감시기능수행을 위해 中立的 대표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 卓越한 해외동포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연방제의 선행조건과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金교수는 이외에도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會를 연방국회구성을 위한 南韓側의 초기단계구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음을 제안하면서 연방제와 연방국회의 등장은 쌍방이 사전에 마련한 방침에 의한다거나 관례에 따라 組織되어져서는 안될 것임을 덧붙였다.

4) 金永煥의 聯邦制統一案

1986년 이른바 민족해방노동자당결성기도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김영환씨는 60~70년대초와는 달리 80년대 중반이후의 연방제통일안은 더 이상 「최선」의 평화통일안이 아니라 「유일한」것이라 하여 학생운동세력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金영환씨는 연방제가 유일한 통일방안인 理由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들었다. 47)

첫째, 남북중 어느 한 쪽 체제를 강요한 統一은 流血衝突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전환반도를 전화와 混亂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며

둘째, 南北의 많은 주민들이 北韓化 또는 南韓化統一에 대해 심한 공포意識을 갖고 있고,

셋째, 어느 한 체제를 강요한 통일은 經濟混亂과 沈滯를 초래하여 민중의

47) 김영환, “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 「항고이유서」(서울:思想界, 1988), pp.149~151.

생활을 고통속으로 빠지게할 것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金永煥씨는 聯邦制統一의 과정을 10 가지로 구체화 하였다.⁴⁸⁾

①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은 우리 국민과 그를 대표하는 정부에 있음을 선언하는 국가주권선언을 선포하고 일체의 外勢를 거부한다. 이 경우 韓美相互防衛條約은 자연히 국제법적 效力을 잃게된다.

② 남북공동명의로 民族平和宣言을 채택하고 南北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한다.

③ 南北韓政府와 美國의 責任있는 代表가 모여 南北 군비축소, 비정규무력 폐기, 駐韓美軍撤收, 韓美軍事同盟解體등을 논의하는 한반도 平和會談을 개최한다.

④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의 韓國休戰協定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 미군을 당사자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⑤ 평화협정에 의해 軍費縮小, 美軍撤收, 핵무기철거, 비정규무력폐기, 한미군 사동맹해체 등을 실시한다. 이때 軍事相互援助條約이라 할지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⑥ 南北이 指名하는 각 2~5 개국 정도의 동수의 중립국대표로 中立國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협정이행여부와 통일연방정부구성시의 민주적 선거여부를 감시케 한다. 여기서 中立國이란 어떤 나라와도 同盟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로서 韓國戰爭 當時 중립국으로 간주되었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되었다.

⑦ 南北은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을 것임과 동시에 모든 나라와 평화공존, 상호주권존중의 原則에 입각하여 친선관계를 유지할 것을 천명하는 中立化宣言을 採擇한다. 이때 한반도 주변 4強을 여기에 署名시키고 그 서명국을 점차 확대시킨다.

48) Ibid., pp.151 ~ 154.

⑧ 상호주민교류·弘報活動으로 상호신뢰를 증대시킨다.

⑨ 남북의 정당·사회단체가 각기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여 弘報活動과 상대주민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民間次元의 交流를 수행한다.

⑩ 南北統一會談을 추진하고 그 結果에 따른 자유로운 출마와 선거운동,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이 保障된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南北 동수의 대표들과 海外僑胞代表들이 모여 聯邦憲法과 國號를 정하고 통일 연방정부의 탄생을 선포하고 單一國號로 UN에 가입한다.

이상의 과정을 제시한 金永煥씨는 統一의 대전제는 民主化임과 함께 계속 독재집단에 대해서는 환상을 품어서도, 방심을 해서도, 타협을 해서도 안된다는 3不原則을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金永煥씨의 통일론은 반외세, 민족자주, 민중주체의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變革理論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론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5) 金重基씨의 聯邦共和國創設案

19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과 국토중단순례대행진개최를 주장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중기씨의 統一論은 과도적인 단계로서의 연방제가 아닌 최종형태로서의 연방제를 主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⁴⁹⁾

즉 金重基씨는 남북이 서로 相對方의 사상과 제도를 용인하는 기초위에서 양쪽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는 남북의 地域政府를 두어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의 創設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한 평화정착의 4가지 前提條件을 제시한다.

① 사회의 민주화실현을 위해 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의 정치활동의 자유

49) 김중기, “민족해방자주화와 연방공화국의 창설”, 「사회와 사상」(서울: 한길사, 1988.9), pp.90~93 참고.

보장,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철폐, 파쇼적 폭압기구의 철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부의 樹立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戰爭危險의 제거를 위해 南北相互不可侵條約, 10 만이하의 상호감군과 軍費縮小, 주한미군철수, 정전협정체결 當事局인 北韓과 미국간의 平和協定締結등을 실시한다.

③ 外勢의 내정간섭과 民族分裂政策을 종식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軍作戰指揮權返還을 이루어야 한다.

④ 이상의 사항실현여부 確認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여 相互檢證을 한다. 聯邦共和國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50), 먼저 民族統一政府는 南北 同數의 代表들과 적당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연방정부를 조직한다.

연방정부는 上命下服의 수직적인 체계가 아니라 모든 위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상설위원회형태로 하며 常設委員會 議長은 남북교대로 하고 對內外的으로 民族統一政府를 대신하되 意思決定방법은 다수결을 排除하고 만장일치로 최고정치회의의 南北代表는 地域政府의 대표성있는 기관(南은 議會, 北은 전체인민대표자회의)에서 자유롭게 선출하여 派遣하는 방식으로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地域政府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는데 전민족의 단결과 合作을 실현하는 원칙에서 政治·國防·對外問題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利益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指導밑에 전민족의 根本利益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政策을 실시하며 南北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努力해야하며 對外關係는 지역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독자적 관계를 갖는 조건에서 연방정부가 조절한다.

50) Ibid., pp.91 ~ 92.

특히 경제적 대외합작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南北에 자유롭게 허용되고 합작한 외국자본의 利權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연방공화국의 창설을 주장한 김중기씨는 연방정부의 任務를 7가지를 강조한다.⁵¹⁾

① 자주적 대외정책을 고수하며 同盟에 가담하지 않고 中立國家로 남되 유엔에는 연방정부가 민족대표로 가입한다.

② 모든 지역의 자유왕래는 물론 임의의 지역에서 政治·經濟·文化活動을 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한다.

③ 군사분계선을 철폐하고 國軍과 人民軍을 통합하여 단일한 지휘체계의 20~30만의 민족연합군대를 조직하여 국방의 자위를 이룩한다.

④ 南北의 경제적 合作과 교류로 통일적인 民族自立經濟를 발전시킨다.

⑤ 南北의 교통과 체신을 連結한다.

⑥ 과학·문화·교육분야의 교류와 합작을 실현한다.

⑦ 勤勞大衆과 전체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福利를 增進시키는 政策을 실시해야 한다.

요컨대 김중기씨의 統一論은 「민중」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는 대신 「근로대중」이라는 用語로 대신하였다는 점,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가로 남을 것을 주장한 점, 最終形態로서 연방제를 분명히 했다는 점등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6) 金洛中씨의 平和統一 3次7個年計劃案

김낙중씨는 4단계에 의한 평화통일 3차 7개년계획案을 제시하였다.⁵²⁾

51) Ibid., pp.92~93.

52) 김낙중, “3차7개년계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 「통일정책에 관한 공청회」(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1989.8.31~9.1), pp.82~93.

김낙중씨는 이 방안을 주장하기 전에는 통일독립청년고려공동체수립案을

①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統治主體의 相互認定과 雙方當局者간의 평화적합의에 의한 統一實現努力 ② 窮極的으로는 민족의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과 1民族 1國家 1體制의 통일민족국가의 주민자치원칙에 의한 민주적 방법으로의 실현보장 ③ 단계별과제의 시간내 실현의 확실한 보장이 입각한 漸進的 단계적 평화통일추구라는 3가지를 평화통일의 3大 必須條件으로 제시한 金洛中씨는 평화통일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서 4단계의 3차 7개년계획안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① 먼저 제1단계는 4년간의 準備期로 평화공존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南北은 相互認定을 하며 最高當局者會談을 실현시켜 단계적 평화통일협정을 締結하고 상설대표부를 설치한다. 또한 高位軍事會談도 成事시켜 군사적 신뢰를 構築하고 相互減軍協定으로 쌍방상비군을 30만까지로 하며 남북불가침협정을 締結한다. 休戰協定은 平和協定으로 바꾸며 쌍방 정부의 許可下에 부분적 交流協力을 실시한다.

② 제2단계는 國家聯合의 단계로서 기한은 7년이며 1民族1聯合國之體制의 초보적 協力關係를 이룬다.

南北同數의 지역대표로 민족최고회의를 구성하고 단일국호, 단일국기, 단일국가, 단일UN가입을 실현하되 군사외교권은 독자성을 유지한다. 駐韓美軍의 철수가 완료되고 대신 UN 평화보장군이 休戰線에 배치되며 거주이전은 허가제로, 南北交流는 신고제로 한다. 言論, 出版, 學文, 藝術의 自由를 적극 보장한다.

③ 제3단계는 聯邦國家의 단계인데 기한은 7년이며 1民族1聯邦國2體制의 고도협력통합관계를 유지한다.

연방국은 민족최고회의를 상원으로, 주민인구비례대표에 의한 연방국민회의를

52) 계속

제시하기도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낙중, 「민족통일을 위한 설계」(서울: 고려서원, 1988) 참고할 것.

下院으로 하는 양원제의회에서 制定하는 憲法과 法律에 운영된다. UN 平和保障軍은 철수하며 연방상비군이 創設되고 南北 및 周邊 4 強國들로 韓半島恒時 中立條約을 締結한다.

居住移轉은 申告制로 하며 單一貨幣를 사용하고 複數政黨候補에 대한 選擇的 投票와 완전공영선거제도를 실시한다.

④ 마지막 4 단계는 統一民族國家의 完成期로서 이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우리 민족은 1 民族 1 國家 1 體制의 민족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기한은 3년이다.

南北總選에 의해 單邦制民族國家를 이루며 의회는 道級地域代表의 민족회의와 人口比例代表의 인민회의의 양원제로 운영되며 居住移轉 등 交流는 完全 자유이며 군사·외교도 완전히 통합되고 경제체제도 單一化된다.

이상과 같은 평화통일 3차 7개년계획案을 제시한 김낙중씨는 統一問題의 실질적 문제점은 적절한 統一方案의 부재보다는 南北雙方의 相互不信과 住民들간의 적대감이라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軍事的對立段階를 평화공존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思想의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김낙중씨의 통일론은 궁극적으로는 1 민족 1 국가 1 체제의 항시 중립단방제를 지향하되 과정에 있어서는 최고당국자회담을 첫 시작으로 하여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과정을 차례로 밟자는 단계론적 통일론이라 하겠다.

7) 文益煥목사의 聯邦制 3 段階 統一案

民衆民主主義만이 自由民主主義이며 그것만이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하나의 문제로 보는 文益煥목사의 통일론은 3 단계 연방제 統一論이다.⁵³⁾

53) 문익환목사는 1988년 4월 16일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주최로 연세대에서

文목사의 이 통일론은 그 자신이 언급하듯이 이미 南과 北에서 提案되었던 것들을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순서를 매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발표시기가 南北學生會談등 통일논의가 극도로 민감한 때라는 점과 함께 이후 1989년 4~5월 入北時 金日成과의 면담에서 「연방제」의 큰 원칙에는 합의를 보았다는 점등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먼저 文목사는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의 前提로서 分斷論理의 克服, 黑白論理의 타파, 과감한 軌道修正, 각종 교류의 확대등 4가지를 들고 있는 文목사는, 먼저 이제까지 지속되어온 준전시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主張한다.

이에 따른 北의 남침을 防止하기 위해 外勢에 依存하지 않고 국민의 支持위에 기반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南北相互不可侵條約을 締結하며 4大國 혹은 UN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야하고 과도적 단계로서 시한부 UN同時加入도 무방하다는 見解를 밝혔다.

이같은 기반이 조성되면 南北韓은 3단계의 연방제로 들어서야 한다.

① 연방제 제1단계는 당분간 군사와 외교까지 南과 北이 獨立的으로 運營하되 UN外交는 단일화하며 진정한 민족자주를 위해 영세중립화를 선언한다. 이는 그동안 김대중씨가 주장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연방제 제2단계는 군사와 외교까지 통합하지만 南과 北이 社會經濟體制를 그대로 維持하는 南北地方自治制를 실시한다. 이는 金日成씨가 제안해온 聯邦制 方式이다.

53) 계속

열린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영세중립화선언 연방제통일 3단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하였다.
「민중의 소리」제 50호, 1988.5.7.

③ 연방제 제 3 단계는 남과 북의 두 單位의 地方自治制가 道단위로 세분화된 단계로서 道마다 實驗을 거쳐 실정에 맞는 체제·제도·정책을 創出하는 창조적인 地方自治制를 실시한다.

이상의 3 단계 연방제를 提示한 文목사는 이후에는 어떤 단계가 올런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를 다음 세대의 몫으로 돌린다.

결론적으로, 文목사의 3 단계 연방제통일론은 연방제를 公式闡明했다는 점, 이전까지 在野에서 2 개국가 永久化, 分斷固着化陰謀로 규정해왔던 UN 同時加入을 採擇했다는 점, 영세중립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8) 進歩政治聯合의 聯邦制統一案

진보정치연합의 통일안은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聯邦制統一案이다.⁵⁴⁾

진보정치연합은 統一問題의 본질을 외세의 支配와 干涉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完全히 回復·실현하고, 南北사이의 대립과 不信을 없애고 민족적 團結을 이룩하는 문제로 규정한 뒤 이의 극복을 위해선 聯邦制를 통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남북쌍방이 同等한 수와 자격을 가진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의 회에 의해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南北兩地域은 지역자치제를 실시할것을 주장한다.

聯邦國家의 통일정부는 첫째, 전민족의 단결과 전민족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등에 대해 討議 決定할 사명을 지니며 둘째, 南北의 交流와 合作을 저극 推進하고 셋째, 南과 北의 사회제도와 행정조직 각당 각파와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의 의사를 強要하지 못하게 하

54) 정태운, “진보정치연합의 통일정책”, 「민족지성」 1989년 4월호, pp.161 ~ 166.

는 기능을 한다.

지역정부는 이같은 연방정부의 指導下에 전민족의 根本利益과 要求에 맞는 범위안에서 각기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진보정치연합은 연방정부는 과도적인 것이 아니라 完結된 統一政府, 統一國家形態임을 強調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先民主改革 後統一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의 樹立을 제1차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① 駐韓美軍의 철수와 미국의 내정간섭종식 ② 군사파쇼체계의 청산과 사회민주화성취 ③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南北不可侵宣言의 채택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④ 北韓資料의 전면적 開放과 자주교류의 실시를 통한 北韓의 態度 변화도모 ⑤ 國家保安法廢止, 사상의 자유보장, 중상모략비방방송의 根絶, 北韓을 자극할 불필요한 행위의 자제, 방송과 言論의 교류, 그의 民族的團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반정책의 추진등이 그것이다.

9) 金浩鎭교수의 統一聯邦共和國案

金浩鎭교수는 통일의 본질적 의미는 1民族1國家形成作業이 완성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一國兩制형의 국가연합과 체제연합은 통일국가의 원형이 될 수 없다면서 統一聯邦共和國(假稱)을 제안하였다.⁵⁵⁾

金浩鎭교수의 통일연방공화국案은 南北韓體制의 통합과정을 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형성단계로 二元化하고 두 단계의 작업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되 경제공동체의 형성작업을 선행시켜야하며 통합의 전초단계로서 개혁이 南과 北에서 實質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論理인데 민주적개혁의 단계→남북경제공동체형성단계→정치공동체형성단계의 3단계로 進行된다.

55) 김호진, “분단극복의 이론과 정책”, 「민족통일의 방안과 정책방향」(서울: 민족통일학회, 1989), pp.15~29.

① 먼저 민주적 개혁의 단계는 국가의 완전한 自主化, 정권의 민주화, 독점예속경제의 대중화와 자립화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시키는 단계로서 북한사회의 개혁도 이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南北經濟共同體形成段階는 남과 북이 적대적 대치상태를 종식하고 화해적 共生關係를 유지하는 중간단계로서 EC 형과 東·西獨型을 절충한 경제적차원의 국가연합관계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의 存在양식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合作과 共同開發 및 공동통상을 실시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文化·學術·體育 등 人的物的交流를 적극추진하되 이 모든 문제는 民族內部問題로 간주한다. 南北간의 物的교류는 면세를 原則으로 하고, 우표를 共同으로 사용하며, 入國비자제도를 철폐한다.

③ 정치공동체형성단계는 4 단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1 단계는 國內 및 國際的 興件 조성단계로서 國內次元에서는 保安法·社會安全法등의 開閉와 反共國是撤廢가, 그리고 國際次元에서는 南北韓 교차승인, 美·日→北韓·中·蘇→南韓關係改善 및 交流增大를 이룬다.

제 2 단계는 平和構造의 제도화단계로서 平和協定締結과 美軍撤收, 韓美合同軍事訓練廢止, 核武器撤去등을 실현한다.

제 3 단계는 주권통합단계로서 理念과 체제는 통합하지 않고 주권만 부분적으로 統合한다. 南北은 同數의 代表로 구성된 위원회형태의 남북연합기구를 設置하고 이를 통해 南北交流와 協力問題를 論議한다. 이 단계의 남북통합은 一國兩制의 동거형태를 취하며 남과 북은 자기 지역내에서만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주권은 南北聯合機構에 歸屬시키되 南北聯合機構의 機能과 權限을 차츰 강화하여 연방국가의 형성을 모색한다.

제 4 단계는 체제통합단계로서 南과 北은 대내외주권은 물론 체제와 理念가

지 統合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건설한다.

이 단계에서 南과 北은 國家的 성격을 완전히 脫皮하고 地域政府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일정한 영역에서 自治權을 행사한다.

남북한당국이 연방국가형성에 일단 합의하면 南北同數로 구성된 민족통일대의원회의(假稱)에서 연방헌법을 기초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지으며, 민족통일회의는 총선을 관리하고 통일정부가 발족하면 解體한다.

聯邦國家의 구성은 연방정부와 연방회의를 主軸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은 지역정부의 감독과 조정에 置重하며 軍事外交問題를 관장한다.

外國과의 조약체결권은 연방정부가 행사하며 남북의 지역정부는 독자적인 군비를 보유할 수 없으나 治安維持를 위해 一定한 수의 경찰은 유지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국방의 自衛를 목적으로 가능한 한 小規模의 군대를 유지하며 貨幣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聯邦議員의 선출은 自由, 平等, 秘密,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연방정부의 명칭은 민족최고회의(假稱)로 하고 常設委員會形態로서 합의제로 운영한다.

민족최고회의는 同數의 南北代表委員으로 구성하며 議長은 對外的으로 統一政府를 代表하고 연방의회에 대해 責任을 진다. 통일연방공화국(가칭)은 자유·평등·복지·민족을 國家理念으로 상정하고 자유와 평등의 調和를 제도화하며 4大國 保障下에 非同盟中立路線을 추구하고 통일국가형성후 단일국호로 UN에 가입한다.

이상과 같은 3단계 統一方案을 제시한 金교수는 남북이 總體的인 변화를 통해 軟性化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現實적으로 북의 변화를 期待하기 어려운 실정에서는 한국정부가 변화를 誘導해야 할 것이라면서, 北方政策의 과감한 推進으로 南北交流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平和協定과 不可侵條約의 締結을 통해 냉전구도로 전환시키며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의 改廢 및 反共國是의 변경을 통해 남의 體制가 갖는 包容力과 優位性을 實證할 것등을 주장하였다.

四四

그러나 金교수는 分단구조를 支配構造로 認識하는 勢力이 있는 한 統一國家形成의 努力은 일정 한계를 克服하기 어려울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變증법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10) 崔鳳潤교수의 過渡民衆聯邦共和國樹立案

재미정치학자 崔鳳潤교수는 民衆主體 永世中立化 統一을 주장하는데 이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서 과도민중연방공화국의 樹立을 제안하였다.⁵⁶⁾

崔교수는 통일문제는 민중주체적 차원에서 다루면 解決의 가능성이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民衆政治, 民衆文化發展, 民衆外交政策, 民衆經濟體制樹立을 구현하는 민중통일정부수립을 제시하였는데 과도민중연방공화국수립은 이를 위한 첫단계이다.

과도민중연방공화국수립시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민중연방공화국헌법을 制定하기 위하여 南北同數로 헌법초안대표회를 구성하고 대표는 양정부대표와 민중대표의 同數比例로 選出한다.

憲法에는 ① 主權在民衆思想 ② 민중의 기본자유와 平等保障 ③ 민중이 발의권, 결의권, 소환권을 확보하는 直接民主主義體制 ④ 民衆福祉向上을 기본으로 한 經濟體制確立 ⑤ 민중문화발전과 義務高等教育制度實施 ⑥ 한반도 영세중립화 외교정책수립 ⑦ 영세중립통일국가를 防禦하기 위한 軍隊再編成과 남북한 군대의 수를 10 만으로 줄이며 軍의 政治介入의 절대금지 ⑧ 地方自治制 실시 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均衡·조화를 이루는 정치체제의 수립이라는 基本原則을 필수적으로 插入한다.

둘째, 연방정부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연방공화국은 우리 겨레를 代表하는 연방회의(입법부)를 구성하는데 이

56) 崔鳳潤·盧承禹 공저, 「民衆主體 中立化統一論」(서울:전예원, 1988), pp. 291~292.

는 南北現存의 9道의 동수(1道3人씩)대표를 민선한 민중연방상원과 남북 두 지역인구비례로 민선된 대표의 민중하원으로 二元制로 운영한다.

② 行政府組織은, 상하 양 민중의회에서 과도민중연방공화국 행정수반을 輪番制에 의해 5년 短期制로 다수가결투표로 선거하되 첫 행정수반은 上院에서 선거한다. 연방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은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전민중을 대표하는 民衆이라야 하는데 연방공화국을 代表하며 憲法에 부여된 권한내에서 국가전반적행정을 감시한다. 행정부조직과 각 행정책임자임명은 憲法規程에 의해서 결정된다.

③ 司法部組織에 있어서는, 연방공화국 사법부 判事7명을 上下院에서 다수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재판장은 최고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在職期間은 10년으로 하고 再選可能하다.

④ 統一完遂政策委員 17명을 上下兩院에서 민간인 8명, 政府側 3부에서 9명을 比例多數投票로 選出하여 통일헌법제정을 5년 이내로 草案해서 양원에 회부시킨 후 3개월 이내에 一般投票에 붙이되 다수로 가결되면 그 헌법에 의하여 統一國家를 수립한다.

이상 崔교수의 과도연방공화국案은 무엇보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한반도의 永世中立化統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4. 聯邦國家Model 통일논의의 평가

聯邦國家Model은 그동안 남한정부의 UN감시하 總選, 단계교류협력론 등에 의해 적어도 남한내부에서 만큼은 큰 呼應을 얻지 못하였으나 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在野·學生運動圈을 중심으로 크게 지지받기 시작하는 큰 변화를 보인 Model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在野·學生運動圈에서는 어느 정도 연방국가Model로의 墨

示的 合意가 이루어진 경향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는 터이다.

더구나 그동안 과도단계로서 주장되어왔던 연방국가 Model 은 최종형태로서도 종종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연방국가 Model 은 상이한 理念과 體制의 통합이라는 側面에서 일견 상당한 妥當性을 갖고는 있으나 오랜 分斷으로 인한 이질감과 相互不信 특히 전쟁의 공포와 뿌리 깊은 反共意識등을 고려할 때 보다 더 신중한 전초단계를 필요로 하는 Model 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相異한 경제체제와 理念的 갈등은 연방으로의 통일달성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南北의 선전선동차원이나 다소간의 헤게모니싸움적 性格을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연방국가 Model 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妥當性과 실현성을 일견 갖고 있다.

그러나 좁은 國土와 資源등을 고려할 경우 最終形態로서의 연방제는 분명 부자연스러운 Model 임에는 分明하며 정지작업없는 일괄적 연방국가 Model 의 適用은 많은 後유증을 쉽게 豫測할 수 있게한다.

결국 연방국가 Model 은 理念갈등과 體制의 이질성등을 고려할 경우 사전 단계가 반드시 先行되어야 하는 동시에 통일조국의 가장 바람직스러운 형태인 1민족1국가1체제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Model 이라 하겠다.

IV. 中立化統一 Model

1. 中立化統一의 概念

한반도의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中立化統一論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中立化統一論은 中立이라는 용어에서 쉽게 연상하기 쉬운 「이데올로기측면에서의 양보」라는 선입견등으로 또 때로는 「이데올로기의 절충」이라는 관점에서의 판단으로 인한 단순한 사고 등으로 어떤 구체적인 통일방안으로서 보다는 초보적 관념수준의 것으로서 論難이 되어왔다.

그러나 점차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中立化統一-Model에 관한 연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이후 부터 北韓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설방안에서 비동맹중립을 공식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中立化統一에 관한 보다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으며 동시에 中立化統一의 올바른 概念把握을 위해 그동안 명확한 구별 없이 사용되어왔던 中立(neutrality) 中立化(neutralization) 中立主義(neutralism)의 概念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1) 中立(neutrality)

中立이란 戰爭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지위로서 양 交戰國에 대한 公平과 無援助를 내용으로 한다.⁵⁷⁾

종래는 단순히 戰爭에 참가하지않은 국가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교전국에 대한 태도를 中立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쟁에 있어서 公平(impartiality) 또는 非交戰狀態(non-belligerence)와 그런 상황을 누릴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키는 概念이다.

57) 朴觀淑, 「國際法」(서울:법문사, 1983), p.419.

中立의 概念을 형식적인 면에서 考察해보면⁵⁸⁾ 첫째, 中立은 戰爭을 전제로 하는 概念이다.

따라서 어느 진영에도 加擔하지 않는 中立主義와는 구별된다. 둘째, 中立은 국가의 地位이지 개인이나 단체의 地位가 아니다. 셋째, 中立은 交戰國에 대해서만 取得되는 地位이다. 넷째, 中立은 中立인 한에서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가 一律적으로 取得하는 地位이다.

이같은 의미의 中立은 3가지 義務를 지닌다.⁵⁹⁾

첫째는 回避의 義務로서 中立國은 交戰國에 대해 兵力·무기등의 공급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防止의 義務로서 中立國은 자국의 領域이 交戰國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는 默認 또는 寬容의 義務인데 中立國은 中立國國民이 交戰國 원조행위나 통상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 交戰國이 일정한 제재를 한다하더라도 이를 默認할 의무가 있다.

2) 中立化(neutralization)

中立化(neutralization)란 일반적으로 제도화된 中立(institutionalized neutrality) 혹은 永世中立(permanent neutrality)이라 불리우는 概念이다.

永世中立은 전이나 평화시를 막론하고 永續적으로 中立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의무를 진 國際法的 地位를 意味하는데, 타국간의 어떠한 戰爭에도 참가하지 않고 또 自發적으로 어떠한 국가와도 戰爭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조약에 의해 갖고 있다. 동시에 中立義務를 존속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써 그 나라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 조약에 의해서 항상 보장되어 있는 國

58) 李漢基, 「국제법강의」(서울: 박영사, 1983), p.448.

59) Ibid., p.449.

朴觀淑, op.cit., pp.421 ~ 422.

家の地位를 말하는 데 이러한 永世中立國을 만드는 과정을 中立化 (neutralization)라고 한다.⁶⁰⁾

영세중립의 創設目的은 나라의 독립과 국경의 현상유지 및 他國支配排除에 있으며 통상적으로 國際條約下에서만 성립된다.

즉 영세중립은 弱少國에게는 周邊列強으로부터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보전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주변열강에게는 國際勢力均衡이 자신에게 不利하게 되는 것을 저지하는 한편 國際秩序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⁶¹⁾

이러한 영세중립은 戰爭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地位인 형식적 概念으로서의 중립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구별된다.⁶²⁾

첫째, 中立은 일시적인 概念으로 戰爭의 終止 또는 전쟁에의 참가로서 그 지위가 終了되나 영세중립은 영구적으로 그 中立이 보장되는 장기적 개념이다.

둘째, 中立은 일반국제법에 의한 것이나 영세중립은 諸國家間의 다변적인 條約 또는 一方的 선언과 그에 대한 타국의 승인에 의한 것이다.

세째, 中立은 전시를 전제로 한 개념이나 영세중립은 平時와 戰時를 超越한 개념이다.

네째, 中立은 잠재적인 交戰當事者로서의 地位이나 영세중립은 嚴然한 국가로서의 地位이다.

60) 崔鳳潤·盧承禹 공저, 「민중주체공립화통일론」(서울: 전예원, 1988), pp. 169 ~ 170.

李洪九, “한국의 중립화와 통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편, 「한국 통일의 이론적 기초」(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p.197 참고.

61) 황인관, “한반도 중립화의 개연성과 당위성”, 「민족통일」(서울: 민족통일촉진회, 1985.7.8), p.7.

62) 趙淳九, “중립화의 적용가능지역에 관한 사례연구 - 한국문제에의 적용가능성 타진을 위한 이론적시도”, 「전북대논집」제 17 집, 1975, p.158.

다섯째, 中立은 두 개이상의 교전국들에 대한 不介入을 의미하는 국제법상의 法律的 개념인데 비해 영세중립은 국가간의 강제를 영구히 豫防·緩和·終熄시키려는 것이다.

3) 中立主義 (neutralism)

中立主義란 정책수립에 일반적 指針을 마련해주는 정치적 규범으로서, 제2차대전후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 自國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외교정책상의 입장을 말한다.⁶³⁾

美·蘇의 兩大陣營 어느 國家와도 軍事·外交的同盟을 맺지않는 이 정책은 非同盟主義라 불리기도 하는데 영세중립등과 같이 국제법상의 概念은 아니다.

이같은 中立主義가 많은 신생국들로 부터 呼應을 받은 것은 先進諸國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최대한 받으면서도 그에 따른 內政干涉을 피하는데 유리하며, 強大國에 개입의 구실을 주지않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진영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外交的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고, 新生諸國에서 민족주의가 高潮되었으며, UN 등 국제기구에서 중립주의제국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등에 있다.⁶⁴⁾

따라서 中立主義는 中立이 戰爭상태를 전제로한 개념인데 비해 평화시에 채택되는 개념이며, 中立이 국제법상의 제도인 것과는 달리 국가의 外交政策의 一環으로서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않는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⁶⁵⁾

63) 李洪九, op.cit., p.197.

64) 「정치학대사전」(서울: 박영사), p.1447.

65) 崔鳳潤·盧承禹, op.cit., p.173.

2. 中立化統一-Model 論議

1) 金三奎씨의 永世中立化統一案

金三奎씨는 1951년 9월이래 일본에 머무르면서 “對外的으로는 中立化 對內적으로는 民主化”가 한반도의 최대과제임을 역설하면서 한반도의 永世中立化를 주장하였다.

金三奎씨는 한 민족 두 체제의 연방론은 現實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統一論은 아니라 하여 연방제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민족자결만이 진정한 統一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민족자결은 곧 민족주권을 確立하는 것으로서 南北은 통일선거를 통해 制憲國會를 구성하고 그 제헌국회에서 통일한국의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바 남북통일선거만이 곧 동포의 주권을 回復하는 것이라 主張하였다.

이와 함께 韓國統一問題는 南北이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美·蘇·中·日의 安保問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의 해결방법은 어느 편에도 군사기지를 두지않고 평상시나 전쟁시나 中立을 지키는 영세중립국이 됨으로써 강대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않는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길뿐이라 하여 영세중립화를 제의하였다.⁶⁶⁾

金三奎씨가 자신이 발간하던 코리아評論을 통해 주장하였던 한반도 中立化統一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⁷⁾

① 한국이 東西 양진영중 어느 한 쪽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게 되면 부분적이더라도 他方에게 위협의 要因이 된다. 따라서 韓國統一은 국제적 동의를 의하여 中立化로 이루어져야 한다.

66) “이쪽 저쪽 통일론 모두 잘못되었다”, 「일요신문」 1989년 3월 5일.

67) 大韓民國公報部(편), 「한국의 중립화통일은 이래서 불가능하다」(서울: 공보부, 1964), pp.13~14.

② 한국의 분할은 東西冷戰의 소산물이며 현재의 南北政權은 美·蘇의 勢力鬭爭의 국내적대변기관에 不過한 사대주의적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美·蘇의 세력투쟁에서 해방되고 민족자주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南北韓 양측이 自由總選에 의해서 수립되는 통일정부에 의해서 대치되어야 한다.

③ 上述한 양측의 성격으로 볼 때 필연적인 歸結이기도 하나 南北兩側은 자기측에 有利한 통일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말하면 한국을 통일하지 않고 현상유지하겠다는 주장이며 자기측에 의한 他方の 흡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방안이 될 수 없는 힘의 대결만이 지속될 것이다.

④ 선거를 통하여 한국을 통일할 경우, 선거를 主管할 선거모체와 선거를 감시할 선거감시문제에 있어서 南北韓의 의견이 相衝하고 있으나 中立國으로 하여금 한국의 선거를 감시하게 한다는 前提下에 동서가 합의할 수 있고 自他가 公認하는 제 3자 즉 중립국을 유엔이 任命해야 한다.

⑤ 한국이 中立化統一되기 위해서는 超黨的 汎國民的 中立化運動이 일어나야 하는데 北韓에서는 기본권이 확보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南韓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⑥ 統一된 中立韓國은 強大國의 국제적 保障에 의해서 정치적 독립과 領土的 보전이 遵守되어야 한다.

2) 金龍中씨의 中立化統一案

在美同胞 金龍中씨는 자신이 워싱턴에 設立한 한국문제연구소의 기관지「한국의 소리」를 통해 중립국감시하의 南北總選을 통한 한반도 中立化統一論을 주장하였다.⁶⁸⁾

① 한국의 지리적 條件은 3大強國 특히 2大強國은 세계최대강국이므로 한

68) Ibid., pp.22 ~ 24.

국의 中立이 要求되며 이 中立은 UN과 中共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방법은 人口比例代表制度에 의해 非同盟國家로 구성되는 中립국감시하에 南北韓總選舉를 실시한다.

③ 中立國委員團은 外國군철수감시, 南北協商斡旋, 중앙정부수립時까지 임시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現 南北韓 政權의 解體와 外國의 철수를 실시하고 南北韓의 著名人士들로 한국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는 中립국 감시단을 보조한다.

⑤ 外國철수와 南北韓의 두 政權 解體, 南北韓 군대의 감축은 選舉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3) 金錫吉씨의 民主中立化統一方案

言論人 金錫吉씨는 1961년 4월 25일 오스트리아식 민주중립화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⁶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韓國民主中立化의 통일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유엔主管下에 南北總選舉를 실시하되 선거주관체는 中立國에 한하여 구성함을 條件으로 한다.

② 동 선거주관기관은 한국의 비상국민대표자회의를 주선할 수 있으며 가급적 選舉감시를 兼任하는 것이 좋다.

③ 現行憲法의 存廢와 改正 및 新制度樹立등의 문제는 장차 통일국회의 권한으로 한다.

④ 한국의 민주중립화통일은 오스트리아의 예에 의함이 무방하다.

⑤ 민주중립화로 통일정부가 수립된 뒤에 駐韓美軍은 撤收하고 同時에 外國과의 군사협정도 일체 폐지한다.

69) 金錫吉, 「민주중립화 통일의 新방안」(서울:국제정경연구소, 1961).참고.

4) 사회대중당의 영세중립화통일案

제2 공화국下에서 이른바 革新界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中立化統一을 적극 支持하고 나섰는데 사회대중당은 1961년 1월 永世中立化統一을 당의 統一方案으로 공식채택함으로써 많은 論議를 일으켰다.⁷⁰⁾

① 外軍을 한반도로 부터 철퇴시키고 영세중립이 보장되는 조국통일을 기본으로 한다.

② 사회대중당의 統一方案과 현정부의 통일방안 및 공산측이 주장하는 연방제위에서 민족최고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美·蘇를 中心으로 유관국가국제회의를 설치해서 南北代表의 참석하에 영세중립보장에 필요한 각서를 상호교환한다.

④ 통일총선거의 준비와 실시를 위해 政治的·軍事的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中立國으로 구성된 감시위원단을 설치한다.

⑤ 영세중립에 대한 확고한 보장하에 南北軍隊의 무장해제를 한다.

⑥ 총선거후 2개월내에 全外軍은 撤收한다.

⑦ 총선거로 수립된 전국의회와 統一政府는 既存 軍事關係條約을 폐기한다.

⑧ 統一의 전제질차로서 南北韓의 政治적·경제적 체제를 改編한다.

⑨ 書信交換, 南北視察團交涉, 過剩生産品을 교환하여 경제교류를 한다.

요컨대 北韓과의 무조건적 협력과 영세중립화통일을 내세웠던 사회대중당의 통일방안은 「先建設 後統一」論으로 당시 어느 혁신계의 中立化統一案보다도 파격적인 것이었다.

5) 黃仁寬교수의 한반도중립화통일案

재미학자 黃仁寬교수는 현재의 勢力均衡狀態에서는 남북한 어느 쪽도 일방

70) 金學俊, “제2 공화국시대의 통일논의”, 「민족통일론의 전개」(서울:형성사, 1986), p.329.

적 승리로 統一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統一은 결국 평화적이고 漸進的인 방법에 의해 이룩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첫단계로서 中立化하는 길뿐이라고 주장한다.⁷¹⁾

남북이 어느 정도의 不利益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統일의 기회를 增進시킬 수 없기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中立化는 양측의 利益과 安全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黃교수는 中立化란 중간에서 이쪽 저쪽을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統일과정으로 存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북은 공산권에 속해있고 이남은 미국진영에 속해 있어 둘이 통합하려면 그로 부터 해방되어 和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중화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양쪽을 양진영에서 解放시켜 中立化시키고 정치체제는 그 후에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통일후에도 強大國에 吸收되지않고 영원히 독자적으로 남을 수 있는 체제, 그러면서도 4대강국을 비롯한 주변의 보장하에 統一論議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영세중립적인 體制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적으로는 南의 연장도 北의 연장도 아닌 통일이어야 하며 外的으로는 周邊強大國의 安保에 無害한 統一만이 타당하고 가능성있는 통일이라 주장하는 黃교수는 이를 위한 몇가지 사항을 제시한다.⁷²⁾

먼저 黃교수는 남과 북이 단일정부를 세우는 것보다도 양측이 우선 서로 만나 합의할 수 있는 민족화해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가들이 정치회담을 하기전에 그 중간단계로서 목사나 海外學者 등 兩側의 非政

71) 황인관, 정대화 옮김, 「중립화통일론」(서울: 신학문사, 1988).

“국민이 극도하는 중립화통일안”, 「해외동포가 본 북한과 그들의 통일논의」(서울: 민중사, 1988), pp.26 ~ 28.참고.

72) Ibid., pp.26 ~ 27.

治인들이 제 3 국에서 民間統一研究所 또는 민족화해연구소같은 것을 세워 대강의 것을 論議한 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主張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면 다음 단계로 또는 통일후의 상태로서 中立化統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黃교수는 평화의 법적규정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 남북이 상호불가침협정을 맺은 다음 한반도의 中立化統一案에 서로 합의하고 이어서 6자회담(南·北·美·日·中·蘇)을 개최하여 4強으로 부터 中立化統一을 보장받을 것을 주장한다.

이렇듯 중립화통일론을 제시한 黃교수는 독자적인 통일작업전개에 있어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였다.⁷³⁾

즉 黃교수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擔當할 세대는 6·25 이후에 태어난 젊은세대로서 6·25 때 피흘린 사람들끼리는 통일이 힘들 것이며 정치인들도 통일문제를 정치도구로만 이용할 뿐 통일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靑年福祉共同體 구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북과 이남에 각각 청년자치제같은 것을 조직하고 판문점에는 청년복지공동체같은 것을 세워 그것을 통일의 총본부로 점차 전환시켜 15~20년후 이북·이남의 청년자치제를 통합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黃교수의 통일론은 4대국보장에 의한 영세중립화를 추구하되 그 추진은 6·25 이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맡기자는 것으로 대강할 수 있겠다.

6) 鄭相九의원. 高麗永世中立國案

鄭相九의원은 평화공존단계→국가연합단계→영세중립국건설의 평화통일 3단계론을 제시하였다.⁷⁴⁾

73) Ibid., pp.27~28.

74) 정상구, 「한반도 통일의 길」(서울: 내외신서, 1988), pp.281~307 참고.

먼저 제 1 단계인 남북한평화공존조성단계에서는 남북간의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교류와 同質性回復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문제등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과감한 接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⁵⁾

① 이를 위해 人的 物的交流를 손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인적교류는 離散 家族의 생사확인 서신왕래, 상봉주선으로 부터 시작하여 親知訪問, 동창생 상봉교류, 學術研究團體交流, 體育交流, 학생교류, 문화예술교류, 관광교류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自由往來方向으로 진전시키는 동시에 慶吊事時에 相互援助祝賀往來까지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해간다.

② 物的交流는 손쉬운 土·特産品交流展示會, 相互不足한 물건 및 過剩生産 물건 등의 교역으로 진전시켜 자유교역토록 하되 비관세제도를 채택하여 전 반교역으로 나아가게 한다. 鐵道, 飛行機등의 交通交流도 도모한다.

③ 文物交流를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기자들의 取材活動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학술서적, 잡지 등을 비롯 이에 수반된 文物을 交流한다.

④ 南北經濟協力委員會를 만들어 교통수단상호지원, 觀光地 공동개발, 자원공동개발지역건설,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 등으로 南北經濟協力을 점차 확대 성취시킨다.

⑤ 南北共同技術開發委員會를 설정하여 南北共同의 기술협력 및 이에 수반된 협력을 도모한다.

⑥ 留學生交流 및 學校視察委員會를 만들어 상호유학생을 교환하며 학술교류를 實生活와 결합시킨다. 방송 및 매스컴등의 전반적인 南北 상호비난을 없애는 동시에 교과서에도 이를 상호 삭제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⑦ 미국과 이북 및 중국간에 이룩된 休戰協定을 美國 및 中國, 以北, 韓國의 4者간의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미군철수문제를 결정한다.

75) Ibid., pp.286 ~ 294.

⑧ 동시유엔가입으로 국제무대에 登場하는 동시에 국가연합체제로 南北韓이 指向할 것을 준비한다.

⑨ 상호감군을 통해 평화정착을 모색한다.

이처럼 平和共存段階가 무르익어가면 南北은 동시에 제2 단계의 국가연합을 성립시키는 작업을 한다.⁷⁶⁾

① 민족통일국가연합회의를 南北同數로 구성하여 국가연합초안을 마련한다.

② 南北韓 國家聯合은 上下兩院으로 구성하고 下院은 人口比例로 上院은 남북동수로 한다. 하원의장은 南韓이, 上院議長은 북한이 되며 국가연합의 대통령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2년씩 교체로 맡는다.

③ 민족통일 국가연합 憲法草案을 각각 南北地域에서 자유민주방식의 선거에 부쳐 확정한다.

④ 확정된 국가연합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합정부를 수립한다.

⑤ 국가연합의 長·次官은 南北同數로 한다.

이같은 국가연합이 건설되면 다음 단계로 永世中立國을 건설한다.⁷⁷⁾

鄭의원은 한반도의 영세중립국건설에서는 南北指導者들 및 국민들이 영세중립국이 되기를 갈망하여 자주적으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美·蘇·中·日 4強이 이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UN으로부터 영세중립을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먼저 南北은 南北韓 영세중립통일연합회를 구성하여 영세중립국가가 될 것을 可決한다.

② 이를 토대로 南北國家聯合主導로 영세중립통일화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친다.

③ 국민투표에서 영세중립국案이 가결되면 南北韓 영세중립통일연합회에서 이

76) Ibid., pp.294 ~ 302.

77) Ibid., pp.302 ~ 307.

를 선언한다.

④ 南北韓 영세중립통일연합회에서는 남북한 영세중립통일의회를 위한 諸般措置를 취하고 이 조치에 따라 고려영세중립국 의회를 구성하는 南北韓 總選舉를 실시하는 데 이때 南北의 주요정당들은 정강에 영세중립국이 될 것을 표방하도록 한다.

⑤ 총선후 소집된 의회는 南北韓의 國家聯合을 폐지하고 高麗永世中立國 성립을 위한 憲法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를 통과한 후 고려영세중립국을 선언한다.

⑥ 새로 탄생된 고려영세중립국은 새헌법이 규정하는 정신에 따라 고려영세중립국이 됨을 承認해줄 것을 미·소·중·일 4國에 요청한다.

⑦ 美·蘇·中·日 4개국의 承認을 받은후 UN安保理事會 추천을 거쳐 UN 총회에서 고려영세중립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같은 鄭의원의 통일안은 국가연합과 영세중립으로 크게 要約할 수 있는 바 특히 4強과 UN의 영세중립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特徵으로 들 수 있겠다.

7) 기타의 中立化統一論議

이상의 中立化統一論議外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中立化統一을 주장하였다.

특히 제 2 공화국에서의 혁신계정당이나 학생들에 의해 中立化統一論은 많은 呼應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연방제와의 接木도 종종 舉論된다.

이밖에 많은 외국인들에 의해서도 中立化統一論은 舉論되었는데 Mike Mansfield⁷⁸⁾, William F. Knowland⁷⁹⁾, Krishna Menon⁸⁰⁾, Edwin O.

78) Mike Mansfield 美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외국인으로서 그는 한반도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을

Reischauer 81), Oran R. Yang, Gregory Henderson⁸²⁾ 등이 한반도의 中立化統一을 주장했던 것이다.

3. 中立化統一-Model 論議의 평가

통일문제는 南北 민족내부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열강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는 國際的 문제이기도 하다.

中立化統一-Model 論은 이같은 점에서 통일은 막연히 우리 민족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周邊列強과의 협조와 동의를 잘 조화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기본인식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肯定的인 측면에서는 國際情勢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Model이라는 평가를 받는가하면 때로는 지나치게 주변정세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50년대 이후 대부분의 한반도 中立化統一論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식 영세 중립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南北統一은 주변제국의 동의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전체의 統一意志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이라는

78) 계속

극동보고서에서 건의하였으며 1974년 7월에도 「Pacific Community」誌에서 한반도 중립화방안에 관한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79) Bong-Youn Choy, Korea : A History (Rutland, Vt.: Charles E. Tuttle Company, 1971), p.408.

80) 한국일보, 1960년 11월 30일

81) Edwin O. Reischauer, "Time for a New American Policy in Korea",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26, 1976), p.27.

82) Gregory Honderson, "Korea : Milirarist or Unification Policy?", William J. Barnds, ed., The Two Korea in East Asian Affairs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7), p.127.

기본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중립화통일 Model 은 그 用語에서 오는 개념상의 混亂으로 인해 지나치게 무조건적으로 거부되거나 또는 支持되어 왔다.

현재의 南北은 각자의 이데올로기 指向性과 우방지향성으로 인해 중립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그리 쉽지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南北이 서로 같은 민족으로서 운명을 함께 해야하는 民族共同體로서의 인식을 강하게 갖고 그 바탕위에 周邊諸國의 勢力關係를 이용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中立化統一論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여기에서 한 가지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의 中立化統一論議가 어떤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觀念的이며 추상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지나치게 「中立化」라는 개념에 집착한 나머지 南北間의 구체적인 합의방식이나 주변강대국과의 조정방식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中立化는 통일조국의 미래상 또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對外政策이지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통일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考慮, 南北이 실질적으로 合意할 수 있는 합리적인 統一方式과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우방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영세중립이 조화를 이룰 경우 훌륭한 통일 Model 이 될 것이다.

V. 段階的 交流協力 Model

1. 段階的 交流協力 Model 의 意味

段階的 交流·協力 Model 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하여 통일달성을 꾀하자는 것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취하는 예비단계에 관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交流’는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그리고 기타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며 ‘協力’은 이같은 교류의 공동기관구성을 통한 수행을 의미한다. 이같은 단계적 교류·협력모델은 결국 기능주의적 接近方式의 것으로서 평화공존론, 수렴론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段階的 交流·協力 Model 은 그동안 남한정부의 남북총선거에 의한 統一論과 접목되어 총선거론의 準備段階論으로서 많이 주장되어왔다. 결국 단계적 交流·協力 Model 은 남북간에 인도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실현된다면 사실상 통일된 狀態와 비슷해짐으로써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점차적으로 실현된다고 보며 窮極的으로는 완성된 통일을 이룩하거나 그 기반조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리라는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소 무리는 있으나 본 研究에서는 편의상 남북총선거론과 함께 다루었다.

2. 段階的 交流·協力 Model 統一論議

1)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1982년 1월에 제의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민족적화합을 이룩하고 平和的 方法과 민주적 기본절차에 의해 統一憲法을 제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자유로운 총선거를 통해 現存하는 남북의 두 정치조직을 하나의 국가조직하에 통합·단일화함으로써 統一民主共和國를 수립하자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

다. 83)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남북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들로 民族統一協議會議을 구성하고 →
- ② 이 會議에서 統一民主共和國의 기본이 될 統一憲法을 기초한다. → ③ 統一憲法草案은 남북한 전역에 걸친 자유로운 國民投票를 통해 확정하고 → ④ 확정된 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統一民主共和國을 建設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政治理念과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하고 합의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통일이 될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간의 비정상적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설정할 것을 제외하고 있다.

잠정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4)

- ① 통일까지 남북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 ② 쌍방의 紛爭解決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다.
- ③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인정하고 서로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 ④ 軍費競爭을 지양하고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 ⑤ 민족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交流와 協力을 증진한다.
- ⑥ 쌍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고 民族利益에 관한 문제를 상

83) 국토통일원, 「民族和合民主統一論」 I ~ IV참고.

84) 국토통일원, 「민족화합 민주통일론」 I (1982), pp.164 ~ 165.

호협의를 한다.

⑦ 서울과 평양에 각기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이 모든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한 고위대표간부 예비회담의 개최를 제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20개 시범실천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다음 제의하였다.⁸⁵⁾

①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道路를 연결 개통한다.

②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기위해 우선 우편교류 및 상봉을 실현한다.

③ 설악산이북과 금강산이남지역을 觀光休養地로 설정하여 자유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방한다.

④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군이 방문하도록 한다.

⑤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⑥ 남북간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해 모락방공을 중지하고 방공취취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공을 자유로이 취취하도록 한다.

⑦ 1986년 아시안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참가하도록 한다.

⑧ 南北을 방문하려는 모든 外國人들에게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往來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⑨ 자유로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⑩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상호신뢰증진을 위해 정치인, 경제인, 청년학생,

85) Ibid., pp.167 ~ 169.

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 인사간의 상호친선방문을 실시한다.

⑪ 남북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쌍방기자들의 상대지역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⑫ 民族文化의 계승발전을 위해 민족사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⑬ 남북간에 각 종목별 체육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國際競技大會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⑭ 쌍방주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일용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다.

⑮ 民族經濟의 번영을 위해 남북한 자연자원의 共同開發 및 共同利用을 실시한다.

⑯ 남북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일제조업체간의 기술자교류 및 생 산품전시회를 교환 개최한다.

⑰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친선경기에 이 용한다.

⑱ 비무장지대내의 동식물 자연생태계연구를 위해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

⑲ 남북간의 군사적 緊張緩和를 위해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철 거한다.

⑳ 남북간 군비통제조치를 협의하며 쌍방군사책임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 용한다.

결국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이같은 시범사업 실천의 단계적 交流協力에 의한 남북총선통일론이라 결론지을 수 있겠다.

2) 金泳三총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金泳三총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6原則 5단계의 단계론적 통일론이다.⁸⁶⁾

86)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각당 후보들의 통일관련 발언내용 - 제 13 대 大選 기간중」, pp.32 ~ 39 참고.

즉 자주·화해·단계적 성취·평화·전환·민족대참여의 6대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國內의 民主改革을 단행하고 북한의 民主改革을 촉구하는 제1단계 →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 교류를 촉진하고 쌍방의 실상을 공개하는 제2단계 →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왕래를 시도하는 제3단계 → 정치·외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민족통일을 準備하는 제4단계 → 1민족 1체제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선포하는 제5단계의 단계론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 案의 골자이다.

각 단계별 추진사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제1단계에서는 민선·민간정부가 수립된 후 우리의 내정개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外交改革을 단행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도 민주화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세계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통일논의에 대한 남북한 住民의 일체적인 공감대를 形成한다.

② 제2단계에서는 서신교환, 체육교류, 고유문화 및 민속의 교류, 성묘단교환, 친지방문, 취재와 보도 그리고 觀光의 단계적 허용, 간접교역의 증대, 直接交易의 모색 등 交流와 실상공개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信賴回復을 기한다.

③ 제3단계에서는 민족의 뿌리 및 역사찾기운동의 공동전개, 대외공동공연과 전시회의 개최, 관세철폐를 통한 직접교역추진, 대외공동 關稅率의 적용모색, 技術訓練 및 기술제휴, 직접·합작투자의 추진, 교통·통신의 자유 이용, 왕래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경제와 문화예술분야 등에서의 協力を 보다 긴밀히 강화함으로써 상호자유왕래의 기틀을 공고히 한다.

④ 제4단계에서는 이미 形成된 민족의 동질성과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한 상호이해의 기반위에서 對 非同盟 및 UN 외교의 공동보조를 모색하고 남북한의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統一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간다.

⑤ 제 5 단계에서는 이상의 앞단계 사항들이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 실천되어 온 民族이 상호협조체제의 價値와 意義를 충분히 인식한 위에 공동체로서의 완숙기를 거친 후, 준비된 통일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남북한 주민들의 최종확인을 거쳐 내외에 1民族1體制의 한민족공동체를 선포한다.

김영삼총재는 또 이같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남북교류로 통일기반을 마련하며, 남북불가침협정체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추진, 共產圈 및 非同盟外交強化, 실향민의 고향방문 조기실현, 통일논의에의 광범위한 국민적참여보장, 군작전 지휘권의 점진적 환원, 교민청 신설, 自主外交確立, 국토통일원의 승격 확대와 국토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겸임등을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統一의 원칙과 관련하여 통일의 主體勢力은 민주세력이어야 하며, 통일의 과정도 민주적 과정이어야 하고, 통일조국의 체제도 진정한 민주체제이어야 한다는 통일의 민주3 원칙을 제시하기도 한⁸⁷⁾ 김영삼총재의 통일론은, 통민족공동체의 概念을 상대적으로 보다 분명히 사용하였다는 점, 統一에 있어 民主의 개념을 강조하였다는 점, 1民族1國家1體制를 통일의 최종형태로 규정하고 민주정부만이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주장한 데서 特徵을 찾을 수 있다.

3) 金鍾必총재의 5 단계 통일방안

金鍾必 新民主共和黨총재의 통일론은 6·23 선언 정신등을 토대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5 단계 통일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⁸⁸⁾

87) 1979년 5월 외신기자 회견에서 밝혔던 통일의 민주3 원칙을 김영삼총재는 1988년 6월 30일 국회 당대표 연설에서도 다시 주장하였다.

「東亞日報」1988년 6월 30일 1字 참고.

88)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I」, pp.51~56; 정연선, “대권주자의 통일론을 평가한다”, 「월간 現代」1987년 12월호, pp.177~179.

김종필 총재는 민족통일과업은 정권적 당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민족사의 요구에 부응한 장기구상의 틀 속에서 일관성있게 追求되어야 할 것이며 統一이 설사 늘어지더라도 6·25 와 같은 동족상잔은 절대 피하는 平和的인 방법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金鍾必총재는 통일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6·23 宣言精神을 계승하여 제국·평화·민주·자주의 원칙하에 ① 남북한의 평화정책 → ② 남북간의 대화 및 交流擴大 → ③ 南北相互協力體制의 구축 → ④ 민족동질성회복 → ⑤ 남북통일의 순서로 推進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산권국가와의 交流는 적극 추진하되 戰爭抑止力으로서의 주한미군주둔과 軍작전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金鍾必총재의 단계론적 접근방법은 과거 民主共和黨政府의 통일방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趙 淳교수의 4 단계 經濟統合案

趙 淳교수는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통한 통일기반조성을 강조하면서 4 단계에 의한 남북한의 경제통합 추진을 주장하였다.⁸⁹⁾

제1 단계는 비전략적 상품무역의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남북한 서로가 필요로 하는 商品을 交流한다.

제2 단계는 부문별 통합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韓半島의 안보문제를 고려하여 석탄, 강철 등과 같은 중공업부문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 바 이는 가장 민감한 부문이라는 점에서 이의 합의여부는 이후의 합의가능성을 시사하는 실험단계가 될 것이다.

제3 단계는 단계별 통합이다.

89) 「남북한 경제역량면에서 본 통합여건」(국토통일원, 1974), pp.57 ~ 59.

이 단계에서는 생산물이나 생산요소, 쿼터제폐지, 이동의 自由化를 실시함으로써 양 市場의 통합을 이루도록 基盤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제 4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는데 여기에서는 남북간 經濟政策의 조정 내지 통일, 대외경제정책 수행에서의 공동보조 등을 취한다.

논문집필연도인 1974년을 기준으로 3년씩의 간격을 주고 있는 이같은 趙교수의 단계적 經濟交流論은 남북의 통일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경제문제이며 과급효과가 가장 큰 문제가 역시 經濟問題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적용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고 있다 하겠다.

5) 崔聖俊·趙基洙교수의 3 단계통일방안

崔聖俊·趙基洙교수는 3 단계에 걸친 단계적 통일정책을 주장하였는데 90) 각 단계별로 다시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구체화하였다.

① 먼저 제 1 단계는 人道主義에 입각한 교류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이산가족의 교류, 남북자유왕래, 남북서신·통신·일반서적 교류, 문화·예술·학술교류, 체육교류, 각종 시찰단교류, UN 산하 국제기구 공동가입, 보건, 의료구호에 관한 교류등을 실시한다.

② 제 2 단계는 經濟的 交流實踐의 단계이다.

남북한 물자 및 상호무역, 경제공동개발 및 공동연구, 經濟技術科學의 정보교환, 공동경제회의 및 경제조직체의 구성, 해외시장 공동개발 및 協力, UN 산하 경제기구 및 國際經濟機構에의 공동가입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실시한다.

③ 제 3 단계는 政治的統一과 會談의 단계이다.

90) 崔聖俊·趙基洙, 「단계적 통일정책의 구체화 방안」(국토통일원, 1973.5).

이 단계에서는 國土統一共同協議會 設置, 통일선거관리위원회 설치, UN 가입, 국제기구 공동가입, 일반적 정치교류등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통일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을 주장한 崔·趙두 교수는 제1단계와 제2단계는 순수한 민간인들간의 交流로서 순서대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3단계는 무척 어려운 단계라고 밝히면서 이 3가지 단계는 남한의 경제발전, 국력배양, 사회의 도의적 개혁, 국가의 총단합이 이루어지고 이것과 병행에서 南北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 기타 남북의 공동대화가 진행될 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段階的 交流·協力Model 통일논의의 評價

段階的 交流·協力Model은 앞에서 言及했던 바와 같이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南北總選論의 전제조건으로 많이 주장되어온 Model이다.

단계적 교류·협력론은 초기에는 뚜렷한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사이의 불신과 이질감을 해소하여 동질성을 回復함으로써 平和共存의 단계를 만들고 이를 基盤으로 구체적인 統一方法에로의 합의를 기하자는 것이었다.

이같은 接近方法은 우선 당장 정치 군사적 문제해결은 힘들다는 전제에서 쉬운 인적 물적교류등을 통해 民族統一부터 이뤄보자는 것이지만 北韓側의 정치 군사문제 우선해결주장과 부딪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왔다.

그러나 第6共和國들이어서면서 활발해진 통일논의의 과정에서 각계에서 남북 교류를 제의하는 움직임들이 크게 일고 있고 정부 또한 올림픽이후의 국제적지위향상과 經濟成長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조금씩 적

용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北韓側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정치 군사적문제해결이 어느 정도 接近해지면 비정치적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단계적 交流·協力Model은 民族共同體라는 기본인식에서 크게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VI. 辨證法的 變革統一 Model

1. 辨證法的 變革統一 Model 의 意味

辨證法的 變革統一 Model 은 분단구조의 총체적인 변혁을 통해서 통일국가 건설을 달성하자는 논리이다.

특히 이같은 변증법적 변혁통일 Model 은 재야나 학생운동권에서 주로 주장되는데 이들은 기존의 理念과 체제를 백지화하고 支配勢力들을 그동안 기록유지를 위해 분단을 야기시키고 고착시킨 반통일세력(正)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統一指向勢力(反)의 鬪爭을 통해 분단구조를 통일지향구조로 재편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건설(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지배세력과 외세의 타과를 통해 사회구성체 全體의 주도권이 못가진 자, 피지배자들로 재구성될 때에만 統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외세의존적인 지배세력이나 제도권의 통일문제주도를 반대하고 민중의 주체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정당·사회단체의 접촉과 交流, 반공법철폐등 政治·軍事的 문제해결을 적극 내세우면서 反政府鬪爭도 병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2. 辨證法的 變革統一 Model 논의

1) 白基玩씨의 反外勢 民衆解放統一論

白基玩씨의 통일론은 통일문제는 민족적 모순과 민중적 모순의 동시문제로서 이 두 가지가 辨證法的으로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反外勢 民衆解放統一論」이다.

철저한 民衆論者인 白基玩씨는 大統領選舉期間중이던 1987년 12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후보초청간담회에서 民衆解放統一論과

機能主義的 統一論을 합쳐 金 九선생의 단일민족국가론을 발전시켰다는 3 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였다.⁹¹⁾

① 민중주도로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분단체제가 사회적으로 귀결되어 있는 상황을 모두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바꾸는 제 1 단계 → ② 이같은 기반위에 2 개의 남북체제를 모두 용인하는 民族聯立政府를 수립하는 제 2 단계 → ③ 이를 다시 국가라는 것으로 귀착시킴으로써 단일민족국가를 완성할 수 있는 제 3 단계의 단계론적 統一論이 그것이다.

3 단계 統一論과 함께, 백기완씨는 다음과 같이 민중해방통일로 가는 원칙 3 가지도 동시에 제시하였다.⁹²⁾

① 제국주의는 반드시 몰아내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 삶의 어느 부분도 절대로 이를 배경으로 해서선 안된다는 원칙

② 모든 政治鬭爭은 통일운동이어야지 權力鬭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③ 통일운동은 사랑도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이념도 신앙도 모두 바쳐 분단과 싸워야 한다는 원칙

이같은 論理에 따라 白基玩씨는 民衆이 주도가 되어 추진해야 할 통일사업으로서 경제의 예측화, 사회적 불평등구조, 문단지향적 가치 제도 문화의 철폐, 주한미군철폐, 핵기지철폐, 평화협정체결등을 들면서 이들은 결국 「反統一勢力」인 현정권의 변혁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南北學生會談과 南北民衆政治會談을 지지·제안하기도 한 白基玩씨의 統一論은, 결국 철저히 민중이 주체가 된 民衆解放統一論이라 하겠다.

91) 이애주 엮음, 「가자! 민중의 시대로」(서울:민족통일, 1988).

백기완, 「통일이냐 반통일이냐」(서울:형성사, 1987) 참고.

92) Ibid., pp.263 ~ 264.

2) 李在五씨의 自主·民主·統一論

全國民族民主運動聯合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李在五씨의 統一論은 自主·民主·統一의 3대 이념에 의해 전개된다.⁹³⁾

李在五씨는 진정한 통일논의를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무제한적 비판, 반공논리의 정권안보용화에 대한 비판, 북한실상의 공개 등의 3가지가 可能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한 조건 5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남북상호간의 통일논의의 확산 ② 남북상호간의 반통일적 제도와 법적 장치의 개폐 ③ 남북사회의 완전개방 ④ 남북상호간의 민간교류·문화교류 확대, 休戰線 일대의 민족통일광장설치를 통한 南北相互接觸의 기회 보장 ⑤ 통일의 구체적 방안·통일후의 국가체제논의를 위한 南北會議構成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5가지 조건을 제시한 李在五씨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과 冷戰論理에 기초한 남북권력의 성격이 民主·民衆·民族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自主·民主·統一의 3대 이념을 통일과 통일이후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 休戰協定の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정부의 대북 창구단일화 반대, 분단 냉전논리의 극복을 강조하는 李在五씨의 통일론은 反外勢民族解放의 自主, 反獨裁民衆解放의 民主에 의한 解放統一로 요약할 수 있겠다.

93) 서울민중운동연합, 「서울민중운동연합」1988.

이재오,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월간경향」1988년 5월호, pp.76~81.

이재오,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열자”, 「민족지성」1988.4, pp.184~194 참고할 것.

3) KNCC의 「民族統一과 平和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宣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88년 2월 29일 제37차 정기총회에서 「민족통일과 平和에 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⁹⁴⁾

이 宣言文에서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원칙으로서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3대원칙에 人道主義 統一論議의 民主化 등 2개를 덧붙인 5대원칙을 제시한 KNCC는 이의 실천을 위한 몇가지 사항들을 남한 정부에 촉구하였다.

①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이산가족들의 만남·재결합의 자유보장, 남북한의 친척·고향방문 허용, 가족·친척 또는 과거의 분단과 관련된 전력때문에 받는 부당차별의 타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增進시키기 위하여 兩側 정부당국의 정보·통일논의 독점지양과 언론자유 보장, 통일문제의 연구와 논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활동 보장, 남북양측의 체제내 비판과 자유의 최대 許用, 세계인권과 UN 인권협정의 준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사상과 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상호비방과 적대감을 建設的 비판으로 전환하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한 相互交流·방문·통신을 개방하며,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學術分野에서의 交流와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문화·예술·종교·스포츠분야에서의 交流와 만남을 개방해야 한다.

④ 남북한의 緊張緩和와 평화증진을 위해 休戰協定の 전환과 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의 추진, 남북상호간의 信賴回復과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때 주한미군과 주한 UN軍司令部의 철수·해체, 상호군사력의 감축과 평화산업으

9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1988. 2.29.

로 전환, 핵무기철거를 실시한다.

⑤ 민족자주성의 실현을 위해 남북간의 協商이나 회담·국제협약에서 민족 자주성과 主體性을 견지하고 민족의 삶과 利益에 배치되는 기존의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정·폐기한다.

⑥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선포운동 전개를 주장하면서, 해방 50년째가 되는 1995년을 평화와 統一의 회년으로 선포하고 平和와 統一을 위한 연대운동의 지속적 展開를 다짐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요컨대 선언발표이후 보수교단의 반발과 남북학생회담제의등이 어우러짐으로써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던 KNCC의 宣言은 종교계의 통일논의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었다.

4) 「해외동포회의」의 統一論

1987년 11월 21일 미국 뉴욕 포리스트 힐즈 리트리트센터에서 해외동포들은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해외동포회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報告書」는 먼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통일의 기본방향을 천명하였다.⁹⁵⁾

① 한반도의 통일방안은 7·4 남북공동성명의 민족대단결·자주·평화의 3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남한측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暫定協定은 휴전상태의 영속화 가능성에서, 北韓側의 3자회담은 자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바뀌어야 한다.

②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통일의 최종목표는 1民族 1國家 1體制이어야 한다.

③ 이산가족만남, 서신교환, 제3국에서의 民間次元의 비정치적교류, 남북교류 및 대화 등 상호불신해소와 信賴構築이 가능한 방안을 통해 남과 북이 변

95) 「해외동포가 본 북한과 그들의 통일논의」(서울:민중사, 1988), pp. 153 ~ 185.

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④ 남북은 상호불신해소와 緊張緩和를 위한 조치로서 평화공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克服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단계로서 연방제를 採擇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⑥ 통일의 과정은 남북한 양쪽이 적절한 시기에 각기 중립화를 宣稱하고 주변강대국의 보장을 받아 비동맹영세중립화노선을 택함으로써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이상의 여섯가지 통일의 基本原則을 밝힌 「해외동포회의」는 緊張緩和 및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장하였다.⁹⁶⁾

① 특정 통일방안의 이데올로기적 절대화나 남북대화의 原則論的 명분싸움을 반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가능한 현실적이고 신축성있는 점진적 交流 및 統一方案을 지지한다.

② 窮極的으로는 1國家 1體制를 지향하지만 4대국 교차승인 및 UN동시가입은 분단영구화를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가 병행될 때 예방할 수 있다.

③ 모든 종류의 대화는 전부 찬성하며 대화시에는 양측에서 제안한 미제는 어떠한 것이라도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도 南北間의 직접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④ 軍통수권 및 작전권의 즉각적 이양,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핵무기 철거,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체, 南北相互不可侵條約締結, 군비축소, 주한미군철수, 비동맹영세중립화노선채택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北韓의 외채상환에 남한이 도와줄 것을 권고하기도 한 「해외동

96) Ibid.

포회의」의 통일론은 緊張緩和와 非同盟 영세중립화 문제에 큰 주안점을 두었다는 데서 特徵을 찾을 수 있다.

5) 한겨레민주당의 한겨레공동체 (Korean Commonwealth) 案

한겨레민주당의 통일론은 분단은 反民族的 사대주의자의 분열책동과 미·소 양대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고착된 것이므로 통일은 이의 타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⁹⁷⁾

이같은 基本認識에서 한겨레민주당은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3원칙에 입각한 ①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회복 → ② 한겨레공동체실현 → ③ 평화통일의 3단계 한겨레공동체 (Korean Commonwealth) 통일안을 주장하였다.

먼저 제1 단계에서는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을 回復하기 위해 ① 남북간의 經濟的 文化的 人的交流의 확대와 분야별 공동협력기구의 광범한 구성 ② 긴장상태의 해소와 남북간의 균형있는 군사력감축을 협의하는 평화회담개최 ③ 남북불가침협정체결 ④ 美·日·中·蘇 등 강대국의 한반도 安全保障條約締結과 중립국 감시인단 감시하의 남북쌍방의 균형있는 군사력 감축 ⑤ 남북쌍방의 군사훈련 및 군비축소에 대한 상설교차감시기구의 설치 ⑥ 남북상호간의 상설교차주재기관 설치 ⑦ 휴전협정폐기와 평화협정체결 등을 실시한다.

제2 단계에서는 ① 대내적으로는 남북 각 지역정부의 독자성을 保障하고 대외적으로는 行動統一을 피하며 한민족전체의 공동발전과 繁榮을 위해 협력하는 정부차원의 남북한대표로 한겨레공동체 (Korean Commonwealth) 구성 ② 핵무기 製造禁止, 實驗禁止, 반입금지의 非核3原則 실현 ③ 한겨레공동체의 단일국호로 UN 가입등을 실현한다.

제3 단계에서는 ① 정부차원에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까지 한겨레공동체예의

97)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Ⅲ」1988, pp.75 ~ 76.

참여확대 ② 남북 각기 외국과의 군사적동맹관계의 청산과 한반도내의 외국 기지와 군사기지 철거실시 ③ 한겨레공동체명명의 한반도 중립화의 대내외선언 ④ 國民投票를 통한 한겨레공동체의 統一憲法 확정 ⑤ 남북총선거를 통한 단일정부·단일국회구성으로 한겨레공동체의 단일국가건설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함께 한겨레민주당은 民族의 자주독립과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民族教育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6) 民衆의 黨의 反外勢民衆統一案

民衆의 黨의 통일정책은 외세배격과 민중주도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⁹⁸⁾

民衆의 黨은 정강정책에서 ① 통일논의와 민간차원의 통일추진의 자유보장 ② 한반도의 실질적 平和定着을 위한 핵무기철거, 남북한 상호불가침조약체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③ 남북한의 동시 군비축소실행 ④ 政治·經濟·社會·文化·言語 등 모든 방면에서의 적극적인 남북평화교류전개를 통한 민족이질화현상 타개 ⑤ 통일을 위한 남북한 협상기구설치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민중의 黨은 군사문제와 외교문제에 있어서의 자주성확립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 ① 미·일등과의 모든 불평등한 條約·協定을 파기하고 자주적 외교, 평등한 대외관계를 實現하며 ② 군작전권의 환수와 주한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와 군사기지의 존속여부는 國民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③ 美中央情報部 한국지부를 비롯한 모든 외국정보공작기구를 즉각 철수시키고 美대사관 등의 순수외교업무 이외의 불법적인 정보공작활동을 금지

98) 「'87 선거평가와 전망」(서울:백산서당, 1988), pp.202~206.

시키며 내정간섭을 철저히 封鎖할 것등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民衆의 黨의 통일정책은 民衆우선에 의한 反外勢民衆統一論이라 하겠다.

7) 社會民主黨의 聯合國家案

社會民主黨은 기존의 보수적인 사고방식과 勢力만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면서 군사문제해결, 비동맹중립노선의 연합국가 등을 주장하였다.⁹⁹⁾

① 남북통일은 전체민족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하며 그 基本精神은 민족동질성보존과 자주적 인도적 평화통일의지의 발현이어야 하는 바 인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교류를 단계적으로 擴大시켜 民族單一國家로의 통일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② 남북한의 상호감군과 민병조직해체, 학생군사훈련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③ 남북이 상호적대관계를 지양하고 거족적인 統一協議體를 구성한다.

④ 남북의 법제속에서 통일의 障礙가 되는 요소를 적극 제거한다.

⑤ 민족통일을 위한 과도단계로서 聯合國家制를 검토한다.

⑥ 비동맹중립을 기초로 한 민족통일과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추구한다.

⑦ 統一된 國土의 자주적방위라는 견지에서 군비를 조정하고 국가의 완전 독립유지를 위해 東北亞地域의 안전보장체제를 추구한다.

민병조직해체등 군사적 문제를 중요시하는 社會民主黨의 통일론은 “남의 자본주의도, 북의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민족노선 민주적 사회주의의 方向에서만 平和統一이 가능한 것”이라는 권두영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쉽게 나타나

99)시인사편집부, 「강령 정책」(서울:시인사, 1988), pp.388~394.

듯이 이념 재정립에 의한 統一摸索이라는 점에서 特徵을 찾을 수 있겠다.

8) 吳忠一목사의 민족공동체건설案

吳忠一목사는 남북의 민족과 정치당국은 현존의 두 체제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정복적 통합적 방법이 아니라 체제와 理念을 초월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民族合議에 의해 창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⁰⁾

이같은 대전제에서 吳목사는 구체적인 統一方案이나 통일조국의 국가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통일을 위한 몇가지 실천과제와 교류방법등을 다음과 같이 남북에 동시에 요구하였다.

① 먼저 민족적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켜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민족구성원이 한겨레임을 確認하고 민족우선의 원칙에서 한겨레찾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② 국토, 정치, 국가체제적 통일에 앞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쉬운 것부터 실현해야 하는 바 천만 이산가족의 거주·생사확인, 가족찾기, 서신왕래, 고향방문, 성묘, 여행등의 무조건 자유허용을 통해 民族構成員의 만남부터 시작해야 한다.

③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모든 交流, 研究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북의 言語, 歷史, 地理, 生物, 自然資源 등 비정치적 학문교류를 우선으로 해서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등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④ 남북한당국은 민족이질화, 적대화의 모든 教育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평화교육 교과서를 공동제작하고 각기 그 교육을 실시한다.

100) 오충일, “체제와 이념 초월해 민족공동체 건설”, 「사회와 사상」 1989년 9월, pp.78~81.

⑤ 남북의 모든 대학에 민족통일과를 설치하고 教授와 學生의 南北의 모든 역사와 현실을 자유롭게 연구함으로써 민족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⑥ 남북한 教授들의 교환강의와 학생들의 교환수업이 허용되어야 하고 제반연구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⑦ 남북의 反民族的 法을 폐지하고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⑧ 남북한 당국은 이데올로기, 남북정치체제, 사상등으로 구속된 모든 政治·思想犯을 석방하고 남북한 인사들의 각종 사회적 活動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

⑨ 남북한거주민은 이데올로기, 南北政治體制, 영토전역의 거주이전등에서 중립이나 선택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⑩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통해 民族의 利益을 도모하고 민족자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족경제의 외세의존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⑪ 남북의 정치·군사당국은 민족간의 군사대결체제를 남북민족방위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남북군사공동회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⑫ 남북한 당국은 休戰協定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민족우선·민족자주 입장에서 이에 배치된 內容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條約을 수정 폐기하고 모든 대외협약은 남북민족공동의 利益위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⑬ 남북한 당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美國의 핵무기의 이곳을 겨냥하고 있는 蘇聯의 핵을 철수시키고 비핵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관철해야 한다.

⑭ 통일이후 민족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청년, 학자, 문화·예술인,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 등 사회각계대표로서 민족적 양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構成된 南北民族代表者協議機構를 설치한다.

⑮ 남북민족과 정부당국들은 祖國解放과 분단의 날인 8월 15일을 민족수치의 날로 정하고 10월 3일 개천절을 민족·자주·통일의 날로 정하여 민족통일축제를 올리도록 한다.

⑯ 남북민족과 정부당국들은 統一의 날을 확정하고 그때까지 모든 분단의 세의 민족내 분단세력을 몰아내는 民族運動을 전개하며 1995년을 통일의 해로 선포하고 민족적 대과업을 완결해야 한다.

이상과 함께 공동주최, 단일팀, 분단개최 등 88올림픽의 어떤 형태로든지의 南北이 같이 하는 올림픽을 해야하며, 平和統一은 쉬운 것이며 가능한 일이라는 긍정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吳幕사의 통일론은 결국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되 정치 군사적 문제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총체적 接近方式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3. 辯證法的 變革統一-Model 논의의 評價

살펴본 바 처럼 주로 재야에서 제기된 변증법적 변혁통일론은 基本的으로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外勢에 의한 분단독재구조로 보고 이의 극복을 위해 反外勢自主化運動, 民主化運動, 統一運動을 같은 맥락에서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民衆의 주체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평화협정체결, 남북제정당 社會團體의 직접교류를 적극 주장한다.

이들은 既存의 정부통일정책은 미국과 남한내 지배블럭의 利益을 위해서만 진행되어온 것으로서 外세의존성이 강한 집권세력이나 기회주의적인 보수제도는 統一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통일은 남북 민중의 주체적 역량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在野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통일론은 통일의 당위성을 신념화

하면서 분단과 분단고착의 責任을 외세와 집권층의 탓으로 돌리고 이의 전면적 變革을 통해 현상을 타파하고 민중이 지배하는 社會를 건설하자는 것이라 하겠다.

Ⅶ. 分斷克服의 새로운 統一論

: 배달공동체건설論 (檀國建設論)

1. 새로운 統一理念의 必要性

분단이래 서로 다른 방식으로 政治社會化된 南北의 겨레들이 통일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공통되게 再定向化(re-orientation)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같은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地理的 分斷은 청산되더라도 民族的 分斷은 극복할 수 없어 남북의 동포들을 명실상부한 「統一國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배달겨레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이래 美·蘇등 외세 강대국들의 세력경쟁에 휘말려 겨레의 利益을 팽개쳐 놓고, 겨레공동체수립이라는 절대적 과제를 뒤로 한 채 남의 이데올로기 싸움만 대신하여 왔다.

물론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利益을 위해서는 지난날 그토록 높이 쌓아온 이데올로기의 벽도 주저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강대국들의 실상이다.

바로 이 때 우리는 남의 싸움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한다. 虛爲意識(false conscionness)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배달민족공동체로서의 우리의 理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理念이란 현장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설명하고 삶의 질곡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설명하고 그것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일하며 염원의 세계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의 방법이자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이념은 이 땅에 자리잡고 사는 사람들의 역사적 存在意識

의 반영임과 同時에 존재양식을 뜻한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결정한 理念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理念에 의해 우리의 삶을 타개해 온 방법과 원칙이 있어왔던 바 그것이 바로 배달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인식이다.

즉 우리 민족은 배달의 단일민족으로서 수천년동안 지연·혈연으로 맺어져 왔으며 같은 언어와 문화로 오랜 역사적 운명을 함께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할 운명공동체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통일조국의 사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리이자 統一祖國의 國民으로서 가져할 思考와 행동의 指標로서의 이같은 統一理念은 굳이 이데올로기로 말한다면 활용적 (operative) 이데올로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본적 (fundamental) 이데올로기이며, 대립적 이데올로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포용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¹⁰¹⁾

그리고 이같은 統一理念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과정에서는 물론 조국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도 진정한 民族統一建設 (Nation Building) 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요컨대 이처럼 統一方法論에 앞서 統一理念을 우선적으로 論하고자함은 남북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정신의 정립없이는 統一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합쳐진다하더라도 단순한 통합이상의 意味는 없는, 그래서 항상 분열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01) 양동안, “분단극복과 통일이념의 모색”, 「현대사회」 1985년 가을호, p.200.

2. 배달공동체의 意味

1) 배달(檀)의 개념

반만년을 한 民族으로서 공동의 문화와 운명을 영위해온 우리 民族은 현재 남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다.

그런가하면 그것도 모자라 각기 나라이름을 「大韓民國」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 내세우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南에서는 「한」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단어로 주장하는 반면에 北에서는 「朝鮮」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단어에 대해 거부감마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즉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民族은 어떤 면에서는 「한族」과 「朝鮮族」 그리고 「高麗族」으로 다시 갈라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우리 民族은 민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민족적 공통분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하겠다.

같은 분단국인 獨逸이나 중국도 민족을 나타내는 호칭만큼은 각기 게르만族, 漢族으로 같다는 점을 보더라도 더욱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이 단순한 호칭상의 문제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現實이고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절실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本여기에서는 「한」과 「朝鮮」의 개념을 구명해보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붉돌」 즉 「배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한」의 개념

우리 겨레는 일찌기 나라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참’으로서 밝고 밝은 환(桓, 韓)한 겨레로서 한겨레(韓族, 桓族)라 불리워져왔으니 이 겨레가 사는 땅은 밝은 땅(地, 달, 達)으로서 밝달(檀, 朴達)이요 또 이 나라는 밝달나라(檀國)로서 환한 한나라(桓國, 韓國)라고도 하였다.

우리말 ‘한’은 ① 크다(大) ② 하나(一) ③ 바름(正) ④ 밝다(光明) ⑤ 넓다(廣) ⑥ 으뜸(元) ⑦ 하늘(天) ⑧ 가장(最) ⑨ 길다(長) ⑩ 못(衆) ⑪ 오래(久) ⑫ 많음(多) ⑬ 모두(諸) ⑭ 임금(王)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¹⁰²⁾ 이는 역시 이와 비슷한 뜻을 지닌 환(桓)의 옛글자이다. 제일 크고 밝은 얼이 한얼()이며 한얼이 만든 나라가 곧 환하고 밝은 나라인 한나라(桓國)라는 것도 바로 이같은 개념에서 연유한다.

이와함께 마한·진한·변한의 三韓도 나라명에 韓을 사용하였으며¹⁰³⁾ 무엇보다도 일제에 강제 합병되기 바로 직전의 전체 우리민족의 나라명이 大韓帝國으로서 韓을 사용하였다는 점도 일견 커다란 意義를 가진다고 하겠다.

나. 「朝鮮」의 개념

「한」이 나라명보다도 우리민족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민족 내부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개념이라면 「朝鮮」이란 단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기간 나라명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다.

檀君朝鮮으로 부터 비롯되는 古朝鮮이 그러하며 近世의 朝鮮이 그러했고, 일제로 부터 해방될 때에도 우리 민족은 朝鮮이라는 명칭으로 해방되었기도 하다.

朝鮮이란 말은 阿斯達에서 연유한다.¹⁰⁴⁾

102) 安浩相, 「국민윤리학」(서울:배영출판사, 1977), pp.147~149.

103) 三韓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安浩相,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서울:사림원, 1979), pp.295~316.

104) ‘朝鮮’이란 명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相時, 檀君實史에 관한 문헌고증」(서울:가나출판사, 1987), pp.257~258.

安浩相, op.cit., pp.263~293 각각 참고할 것.

阿斯達는 「朝」(아스), 「朝光」, 「朝日」, 「朝陽」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阿斯와 「山谷」이라는 뜻과 함께 「들」 즉 平野 또는 平壤(벌내)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達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阿斯達(으스달)은 「朝光이 비치는 땅」, 「朝日이 비치는 벌판」, 「陽地」, 「陽原」, 「陽谷」의 뜻이 되는 동시에 白岳(북괴)과도 상통되는 뜻을 안고 있다.

그러나 檀君朝鮮시대의 옛 우리 겨레들은 도움이 있던 平壤지방을 우리 고유의 말인 「으스달」 또는 「북달」이라 불렀을 뿐 漢字音인 조선으로 발음·호칭하지는 않았다.

즉 朝鮮이라는 호칭은 중국사람들이 으스달을 漢字로 意譯하여 부른 것으로서 중국인들은 檀君朝鮮이 平壤 즉 으스달로 환도한 이후 부터 이 곳을 가리켜 중국보다 나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받는 아침 햇빛(朝日之光)이 곱고 밝은(鮮明) 곳”이라는 뜻으로 이를 略稱하여 朝鮮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와함께 近世朝鮮 역시 明나라에서 얻어온 이름이라는 점을 굳이 들지않더라도 朝鮮이란 호칭은 중국사람들이 자기들 본위로 우리민족을 불러내려온 것이라 하겠다.

다. 「배달」의 개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개념이 우리 민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이같은 의문의 가장 정확한 답이 「배달」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적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세계 어느나라의 그 것보다도 웅진하고 심오한 건국신화를 떠올렸다.

즉 국가와 민족이 대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한가지 구심점으로서,

「단군」이라는 건국신화를 떠올렸다는 것이다.¹⁰⁵⁾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서로 상이한 이념과 체제에 의해 民族의 동질성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족화합의 유일한 象徴으로서, 공통분모로서 「배달(檀)」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해야만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하늘(한을, 天)에서 나오는 광명은 桓(환함)이요 땅에서 나오는 광명은 檀(밝음)이라 하여 桓의 사상을 땅에서 구현한 것이라 檀이라 하였다.

배달의 개념도 바로 이같은 데서 비롯되는데 한얼나라인 이 한나라를 본떠서 땅위에 세운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最, 太, 한) 밝은(明, 白, 밝) 산인 한백산(太白山, 白山, 白頭山)에 세운 배달나라(檀國, 倍達國)요 또 이 나라에 살던 겨레를 배달겨레 또는 배달겨레(檀族, 倍達族)이라 하였던 것이다.¹⁰⁶⁾

따라서 보다 근본적 의미에서 한의 사상을 현실로 구현시킨 것이 즉 우리 겨레들의 공동체로 실체화시킨 것이 배달 즉 배달(檀)이라 할 것이다.

또한 배달과 배달이라는 글자도 언어학적으로 볼 때 배달의 ‘밝은’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밝다, 양다, 밝양다, 다, 다, 붉다, 다 등으로 쓰이며 ‘달’은 땅(地)을 뜻하는 것인 바 흔히 양지를 양달, 음지

105) 엄격한 의미에서는 檀君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 檀君을 언급한 서적중 중간중간에 “帝日”이라는 구절이 있는 데서도 알수 있듯이 檀君이 아니라 檀帝가 맞을 것인 바 「君」이라는 호칭은 강봉한 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던 자들의 사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06) 「檀檀古記」, 三聖記全 下篇; 「太白逸史」, 三神五帝本紀 第一, 神市本紀 第三 각각 참고할 것.

를 음달이라 부르는 것이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와 「밝」은 「배」로도 많이 불리워졌는데 이는 새밭인 새벽, 새배, 새복, 새북, 새비등으로도 일컬어졌던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결국 밝달(檀)은 배달이요 밝달나라(檀國)는 배달나라요 밝달임금(檀君任儉)은 배달임금이요 밝달겨레(檀族)는 배달겨레였던 것이다.

2) 배달공동체의 의미

南北分斷은 현재 南北이 지니고 있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의 근본적인 원천이요 심층인자이다.

이렇듯 분단은 배달민족성원의 참다운 행복과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인 바 조국통일은 바로 이러한 분단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統一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자 환상이다. 統一은 어디까지나 온전한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출발이자 주춧돌일 뿐이다. 共同體구성원 각자의 인간다움의 실현을 保障하는 참다운 民族共同體의 건설은 통일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 그 자체로서 분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窮極的인 도달점은 인간다움의 완성에 기여하는 참다운 民族共同體의 건립에 있다는 말이다.

앞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공동체적인 삶의 주체로서 공동체적인 삶의 영위를 통해 인간다움을 완성시켜가는 存在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共同體라고 해서 모든 種類의 공동체가 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실현케하는 데 반드시 肯定的으로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共同體構成員 개개인의 인간다움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만이 참다

은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렇지않고 사회나 國家등의 공동체적 질서가 구
성원들의 삶을 非人間化시키고 인간성을 박탈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존립의 명분도 정당성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배달민
족공동체의 수립의 必要성과 당위성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한다.

現在의 분단이라는 현실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民族共同體樹立에 실패하
고 각기 남북이 각기 반쪽공동체속에서 살아감을 뜻한다. 온전한 하나의 공
동체가 아닌 반쪽짜리 공동체의 분단상황하에서 민족전체의 발전과 개인의 발
전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고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다.

혹자는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배달민족은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도 한
다. 분단에 따른 대립때문에 南北韓 모두가 최대의 努力으로 競爭的 發展을
추구한 면이 있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설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가 우호적
競爭關係를 유지했다면 모르거니와 극도의 적대적 競爭關係를 유지해온 터에
분단이 각자의 발전에 밀거름이 되었다면 이는 가학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
는다.

단순히 한 民族이 둘로 나뉘어 살아간다는 평면적인 意味가 아니라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분단의 현실이다. 같은 民族끼리
둘로 나뉘어 서로의 최대의 위협적 存在로 인식하고 있는 反共同體的 분단
상황속에서는 어느 쪽도 정상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적대적 대치의 분단상황속에서는 인간의 價値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적
條件들이 유보되고 자유와 풍요가 유보되는가하면 또 그것들은 상대의 위협
적 存在를 이유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 → 경쟁 → 발전이라는
도식은 지극히 非民族主義的이며 反民族主義的인 발상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남북분단의 현상에 안주하려는 의식은 버려야 한다. 진정한 民族의 統一이
없다면 민족은 여전히 半독립상태에 지나지 않으며 半독립상태에 있는 한 민

族의 發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통일으로써 분단의 모순을 克服하고 진정한 民族建設(Nation Building) 과 國家建設(State Building)을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 배달민족은 모든 민족적 에너지를 지혜를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집단에는 크게 수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어떤 共同目的에 의해 존재하는 「結社」이며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사실로 존재하는 「共同體」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배달민족은 정치적 결사에 의해 민족공동체의 단일성이 위협받고 있다.

共同體란 집단의 삶의 터전인 땅과 역사에 근거한 정감의 응결체인 데 이것이 그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民族 즉 民族共同體가 되는 것이다.

물론 民族이라는 말만 써도 民族共同體라는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共同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民族에 굳이 共同體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공동체라는 용어를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당연히 共同體여야 할 民族이 현실적으로 共同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배달민족이라는 깊은 뿌리에 바탕하여 긴 역사속에 공동체로 살아왔으며 공동체로 살아야 할 한 民族이 분단된 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共同體를 형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데 바탕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동성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번창해온 배달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은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 끈질

긴 생명력이야말로 근대민족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배달민족존재의 가장 적극적인 확인요소이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 배달민족은 民族共同體는 있으나 아직 그에 합당한 정치적 표현을 구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民族共同體를 어떻게 정치체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통일문제의 진수라 할 수 있다.

결국 배달공동체란 우리 배달민족이 서로를 「위하여」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살면서 서로 함께 일하고 함께 겪으며 함께 존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모두의 집합적 努力과 의지의 뒷받침위에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다.

3. 배달공동체건설론의 3大理念

南北統一은 그것이 단순히 분단이전으로의 회기가 아닌 배달민족전체의 繁榮과 자존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것인 까닭에 전민족적 합의와 최대공약수가 保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基本理念으로서 통일의 과정과 통일후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 民族·民主·民生의 三民理念이다.

1) 民族主義

통일은 어떤 계층도·소의 또는 배제될 수 없는 민족성원전체의 問題로서 民族全體가 통일의 주체이다.

동시에 「民族」은 대외적으로는 自主·自立·自尊·自強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自主: 통일은 민족주체성을 바탕으로 모든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自立: 통일국가는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新제국주의나 膨脹主義에 의한 新

예곡상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自尊 : 배달민족은 반만년의 역사의 문화·전통을 지닌 자랑스런 단일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임한다.

自強 : 民族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外勢의 무력침입에 대비하여 전체민족성원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한다.

2) 民主主義

통일은 일부 집권계층이나 勢力의 강제적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민족의 民主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고로 그 과정이나 주체, 그리고 통일이 후에도 民主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自由·平等·人權·平和의 精神이 존중되어야 한다.

自由 :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인간으로서 최대한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平等 :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인식에서 민족성원 전체가 억울하게 부의 幸福을 제한받는 일이 없이 고루게 누려야 한다.

人權 :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도 또 통일후에도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물론 國民으로서의 기본권과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平和 : 통일은 民族成員全體의 번영과 자존을 위한 것인 바 고귀한 생명을 앗을 수 있는 일체의 무력이나 暴力을 배제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民生主義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통일민족국가는 전민족이 함께 부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보다 幸福된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의 하나로서의 경제적 價値를 최대한 고려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民生問題에 적극 임

해야 한다.

이에 전민족성원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福祉의 정신이 嚴格히 지켜져야 한다.

4. 二元執政府制 배달민주공화국 수립방안

1) 제1 단계 : 배달공동체 (THE KOREAN COMMUNITY) 형성단계

제1 단계로 남북은 象徴的 의미의 배달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동수로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배달최고위원회를 각 지역의 국회로 부터 동의를 얻어 조직한다. 배달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의 협의체적 성격을 가지며 祖國統一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統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실재」와 함께 사상과 제도의 차이라는 現實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 相互信賴를 통해 배달공동체로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 공존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가장 민감하게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군사적문제의 해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로부터 단순한 불신의 정도가 아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는 南北의 극도의 적대적관계를 고려할 때 이 政治·軍事的問題의 해결이란 실로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 問題와 관련하여서는 經濟·社會·文化·藝術등 비정치적인 면에서의 交流를 통해 상호보완성을 높임으로서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接近하자는 기능주의적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통일은 이론만으로 또 당위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現實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

소의 융통성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統一問題가 분단극복의 문제와 같은 脈絡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통일의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있는 北과의 협상(?) 문제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줄곧 정치·군사적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해왔고 이에 반해 남은 비정치적교류를 주장함으로써 서로가 제1차적 관문조차 넘지 못해 왔던 게 事實이다.

그렇다면 이젠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다음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다 현명한 方法이 될 것이다.

이는 다분히 協商과 흥정게임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배달공동체라는 개념이 政治共同體, 經濟共同體, 社會共同體, 文化共同體등을 고루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때 정치공동체의 문제도 분명 배달공동체 형성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달공동체형성에 있어 이들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매기기란 힘든 것이다. 이들 모두가 상호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배달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狀況에 따라 우선 순위가 문화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經濟共同體가 될 수도 있으며 社會共同體나 政治共同體가 우선으로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군사적 문제는 분명 정치공동체형성의 문제이며 이 같은 점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접근에 망서릴 하등의 이유는 없다. 더구나 그것이 北이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그로 인해 문제해결이 벽에 부딪쳐왔던 걸림돌이었다면 더욱 積極的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信賴回復과 함께 협상테이블에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남북의 적대적관계는 戰爭構造(休戰體制)로 부터 유래하는 것인 바 戰爭構造를 평화구조로 바꾸는 문제는 실로 시급하고도 절박한 것이다. 그러

나 평화구조는 단순히 戰爭抑止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평화구조란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함은 물론 동족상간의 원인을 根本적으로 제거하면서 軍費를 축소하고 또 이를 통해 통일공존체제의 발달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外勢를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祖國統一에 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향한 제1단계로서의 평화공동체 (Peace Community) 형성을 위해 南北相互不可侵條約締結, 상호감축과 함께 休戰協定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군작전권을 반환해야하며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撤收함으로써 평화구조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平和共同體形成과 함께 남북은 非정치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동질감 회복과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協力共同體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가장 큰 경제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타분야에의 확산을 기하고 예술교류, 국토순례, 관광지순례, 스포츠교류, 학제조정등을 통해 상호인식과 같은 歷史를 지닌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回復한다.

이와 함께 이 단계에서는 民族의 가장 큰 공통분모인 언어통일작업(예컨대, 두음법칙이나 단어의 개념 共同規定 등)과 문화재공동발굴, 역사공동연구등을 實施한다.

이같은 작업들로 비정치적부분의 統수를 추진하고 국기, 국가, 국호, 국화등의 통일작업을 병행한다.

國際스포츠大會나 예술제, 국제학술회의 등에는 반드시 단일팀으로 출전한다. 그러나 국군과 인민군 등 군사문제와 외교권에는 독자성을 갖는다.

2) 제2 단계 : 발달연립민주공화국 수립단계 (THE UNITE STATE OF KOREA) - 南北聯立政府

제 1 단계의 배달공동체 형성으로 민족공동체의 認識이 南北 民族構成員사이에 보편화되면 南北은 영세중립화를 宣稱하고 배달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 남북양지역정부는 철저한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되 외교권과 군사권등은 배달민족최고의회와 남북동수의 대표로 構成된 연립정부의 강력한 지휘를 받는다.

이 단계에서는 배달민족최고의회는 지역비례대표 議員으로 구성된 상원과 인구비례대표의원으로서 구성된 하원의 양원제로 運營한다.

남북의 양 地域政府는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며 철저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준공화국적 特徵을 지니는 州로 된다.

남북의 각 州는 단순히 南州, 北州로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질감과 배타심을 해소하도록 한다.

배달최고 의회와 배달연립정부는 南과 北의 地域政府를 지도하며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은 물론 남과 북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제도와 行政組織에 대해 최대한의 권한을 인정해야 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양 지역정부는 최고민족의회에 위임한 모든 問題에 관한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그의 주권, 자유, 독립 및 조약의 명문에 의해 최고의회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機能과 관할권을 가진다.

어느 한 쪽에서 반역죄, 특별중죄 또는 고도의 不法行爲를 범하여 유죄로 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법의 제재를 피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도피해 온 지역의 요구에 의하여 그 犯罪의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곳으로 인도되고 이송되어야 한다.

최고의회의 동의없이 연립정부는 國家에 사절을 파견 또는 접수하지 못하며 회의, 협정, 동맹, 조약 등에 가입하지 못한다.

최고의회는 戰爭과 平和의 決定, 대사의 파견과 접수, 조약과 동맹의 체결 등의 事項에 권한을 가지며 양 지역정부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紛爭

의 최고 재소기관이 된다.

共同防衛 또는 공공복리에 사용되기 위해 최고의회에 의해 승인된 모든 전비와 다른 費用은 양 지역 전체토지의 價値에 비례하여 할당된 공공재정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土地와 건물 또는 개량사업은 최고의회가 수시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최고의회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된 병사를 모집할 權限을 가지는데 모집은 義務的이다.

장교와 병사는 최고의회가 동의한 時間內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최고의회가 狀況을 고려하여 州간의 장교와 병사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고의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최고의회는 휴회할 수 없으며 매번 의사록을 發行해야 한다. 최고의회는 共和國의 공동채무를 지불하고 공동방위와 공공복리를 위해 對備하는 目的으로 조세, 간접세, 수입세 및 소비세를 부여·징수하는 권한을 가지며 간접세, 수입세, 소비세 등은 양 州 동일하여야 한다.

최고의회는 다수결을 原則으로 하며 議員은 지역정부와 연립정부의 공직겸임을 禁止한다.

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의장은 최고의회에서 選出되는데 2년씩 남북교대로 한다.

결국 이 제2단계는 양 地域政府가 대내관계에서는 상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상호 특구로서 완전자치권을 行事할 수 있으나 對外關係에서는 민족전체의 繁榮과 幸福을 추구하는 배달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체에 일정부분 제한받는 단계라 하겠다.

3) 제3단계 : 배달민주공화국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수립 -
二元執政府制

배달최고의회와 배달연립정부의 機能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정통성과 대표성을 獲得하고 民族社會의 동질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면 남북州지역정부는 인 구비례의 원칙에 의해 總選舉를 실시하고 1民族 1國家 1體制의 배달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천명한다.

통일은 그 內容과 현실성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통일, 가장 후유증이 적은 統一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統一政府의 형태는 二元執政府制가 적합할 것이다.

二元執政府制는 국방·외교는 국민의 直選投票에 의해 선출된 大統領이 맡고, 경제·치안등 내정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맡게하여 국가권력을 大統領과 국무총리에게 이원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내정으로 인한 여야의 대립과 이에 따른 混亂이 국가존립에 직접 관계되는 외교 국방에 까지 파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정부형태이다.

즉 二元執政府制는 강력한 영도력을 장점으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는 독재화의 우려가 있으며 내각책임제는 정당의 이합집산과 파당성에 따라 정국안정을 기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용이하게 平和的 政權交替와 정국안정을 이룰 수 있는 長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二元執政府制는 대통령의 권력집중방지와 함께 오랜 분단으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현실에서 政治發展과 함께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二元執政府制를 經驗하거나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가 70여년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에이레가 50여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프랑스 그리고 최근엔 포르투갈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獨逸 바이마르憲法도 이론적으로 평시에는 의원내각제로 운영하다 「안정과 공공질서가 중대한 混亂과 위협을 받을 때」 대통령에게 긴급권을 주어 직접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規定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여 二

元執政府制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二元執政府制는 많은 나라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나름대로의 特徵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바 一律的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特徵을 찾을 수 있다.

- ① 대통령의 임기는 4~7년으로 국민의 直選投票에 의해 선출된다.
- ②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을 임명한다.
- ④ 국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국회해산권을 가진다.
- ⑤ 대통령은 국가비상시에 緊急權을 가진다.

그러나 이처럼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정까지 맡으며 평상시에는 내각이 행정권을 갖고 국회에 責任을 지는 내각책임제를 운영된다고는 하나 緊急權이 惡用될 경우 대통령이 위기분위기를 造成하여 정국불안과 독재화를 促進시킬 가능성과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없지않다.

따라서 統一政府에서는 비상시뿐만 아니라 平常時에도 외교 國防에 관해서는 대통령에 전권을 주는 대신 대통령의 緊急權과 非常戒嚴宣布시에는 10일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등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내정만큼은 국무총리에게 強力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회에 강력한 권한을 줌으로써 國會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의 性格을 강화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소환제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역비례의 상원과 인구비례의 하원의 양원제로 運營하며 철저한 地方自治制를 실시한다.

統一國家의 정치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經濟體制이다. 말할 것도 없이 통일국가는 1民族1國家1體制여야하며 경제체제 역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存在하는 경제체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소유형태와 경제조정기구

등을 基準으로 할 경우 크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 바 통일조국의 經濟體制는 이들의 변증법적 통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크게 보아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와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南과 北의 경제체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통일조국은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적은 객관적 조건을 고려할 경우 「계획성이 강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선진국의 經驗에서도 이의 합리성을 잘 엿볼 수 있다. 따라서 統一祖國의 경제체제는 社會資本主義 등으로 명명할 수 있겠으며 이는 窮極的으로 민주복지국가건설의 제1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통일조국은 경제성장, 완전고용, 사회보장, 평등한 소득분배, 최저생활보호, 정치발전등을 이룩할 수 있으며 자립민족경제를 훌륭히 엮어낼 수 있게될 것이다.

여기서 自立民族經濟란 概念은 사회적 생산력의 담당주체는 民族資本家이며 민족경제의 담당세력은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민족구성원이며 국민경제내에서 自律的 재생산구조를 갖게됨을 뜻한다.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상속제의 實施등을 통해 階層問題를 해소하며 균등한 기회를 주되 개인의 재능과 欲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融通性을 기해야할 것이다.

결국 통일조국은 民族·民主·民生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福祉民主主義를 추구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최대한 행복과 인권,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전체민족의 번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VIII. 結 言

오늘날 우리 民族은 분명히 分斷構造속에 살고 있다. 이렇듯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부분질서로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分斷構造는 자연히 부분질서 내부의 사회화과정도 상이할 수 밖에 없게 하였던 바 조국통일문제도 統一推進의 근거를 민족적 동질성회복과 國家的 동질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찾지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民族은 이같은 分斷構造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나치게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만 집착함으로써 현실적인 「분단」의 性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왔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統一論議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통일에의 추상적이고 명분적인 분석단위를 기반으로 하되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분단의 해소방법 등에 科學的인 초점을 맞추는 연구방법론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살펴본 바 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통일문제를 고민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물론 단순히 統一達成이라는 次元에서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統一政策이나 방안들이 당장에 期待하는 效果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무익하거나 실현성이 없는 것이라고 배제해버리거나 비관론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이러한 努力들의 상호 변증법적인 發展을 통해서만 통일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統一問題에의 理論的 科學的 접근을 위해 本 研究에서는 그 가장 구체적인 형태인 통일방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어떤 意味에서는 「한民族」, 「朝鮮族」, 「高麗族」으로 또다시

나뉘어진 우리 民族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배달」(檀)을 제시하고 배달민족의 구체적인 정치적 실현으로서 民族·民主·民生을 원칙으로 二元執政府制의 정부형태를 갖는 배달공동체 건설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統一方案이 없어서 통일이 안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북의 갈라진 民族構成員들 가슴 가슴에 우리 民族은 역사와 운명·문화를 함께 해왔던 「붉들겨레」 즉 「배달민족」이며 따라서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의 「배달나라」(檀國)를 건설해야한다는 民族共同體意識이 강하게 표출될 때 民族統一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民族統一이 다시 國土統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 民族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진정한 祖國統一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가. 단행본

姜萬吉,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서울:창작과 비평사, 1988)

具永祿, 「人間과 戰爭」(서울:법문사, 1983).

共産圈研究室편, 「韓國統一과 體系再統合」(서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_____, 「韓國統一과 國際情勢」(서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_____, 「韓國統一의 理論的基礎」(서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國土統一院, 「各界 統一論議 資料集」I~III, 1988.

_____, 「國家聯合事例研究」, 1986.10.

_____, 「國際統合理論의 研究」, 1986.

_____, 「分斷國家의 統一機構」, 1969.

_____, 「分斷國統合事例研究」, 1986.7.

_____, 「分斷國家統合理論研究」, 1986.7.

_____, 「세네감비아 연방합의과정사례연구」, 1983.

_____, 「키프로스 분단과정 및 統合努力 事例研究」, 1983.

_____, 「통일예멘 공화국 합의과정사례연구」, 1983.

_____, 「統一韓國의 미래상」, 1986.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統一政策에 관한 공청회」, 1989.8.31~9.1.

김낙중, 「民族統一을 위한 설계-統一獨立靑年高麗共同體案」(서울:도서출판 고려서원, 1988).

- 김명기, 「南北韓 聯邦制統一論」(서울: 탐구원, 1988).
- _____, 「國際法上 南北韓의 법적지위」(서울: 화학사, 1980).
- 김준희, 「분단국가 一般理論에서 본 우리 재통일문제 解決方案의 윤곽」(서울: 국토통일원, 1974).
- 김병호, 「民族分斷과 통일문제」(서울: 한울, 1985).
- 김진훈, 「선거를 통한 統一案 研究」(서울: 국토통일원, 1974.9).
- 김학준, 「反外勢의 統一論理」(서울: 형성사, 1981).
- 大學統一問題研究所 協議會編, 「통일논의의 제문제」(서울: 대왕사, 1978).
- 문익환,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서울: 학민사, 1984).
- 민병천, 「民族統一論」(서울: 고려원, 1985).
- _____, 「90 년대를 전망한 우리의 統一方案研究」(서울: 일해연구소, 1988).
- 박관숙, 「國際法」(서울: 법문사, 1975).
- 박관용, 「통일문제의 이해」(서울: 한얼, 1989).
- 박창희, 「新북한정치론」(서울: 일신사, 1988).
- 백기완, 「통일이냐 반통일이냐」(서울: 형성사, 1987).
- 백상진, 「選舉를 통한 통일안검토」(서울: 국토통일원, 1970).
- 아시아·태평양 평화정책연구소편, 이승렬 옮김, 「조선통일론」(서울: 도서출판 세계, 1988).
-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서울: 사람원, 1979).
- 양성철, 「南北統一理論의 새로운 전개」(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양호민 外, 「民族統一論의 展開」(서울: 형성사, 1986).
- 우재승, 「통합이론의 비교연구와 韓國統一接近方法」(서울: 국토통일원, 1972).
- 윤근식, 「남북한 통일의 과도기 기구 모델에 관한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80).

- 이상시, 「단군실사에 관한 문헌고증」(서울:가나출판사, 1987).
- 이상우, 「統一韓國의 摸索」(서울:박영사, 1987).
- 이 한,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上·下」(서울:은누리, 1989).
- 이한기, 「국제법 강의」(서울:박영사, 1975).
- 이찬구, 「3단계 統一對策」(서울:노벨문화사, 1971).
- 李洪九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民族主義」(서울:박영사, 1984).
-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산하 평화적 조국통일학생추진위원회편, 「우리는 결코
 코 들일수 없다」(서울:남풍, 1988).
- 전 웅, 「제3 이데올로기」(서울:전예원, 1981).
- 정상구, 「한반도 統一의 길」(서울:내외신서, 1988).
- 정용길, 「分斷國 統一論」(서울:고려원, 1988).
- 정용석, 「전환기의 統一論爭」(서울:나남, 1989).
- 최봉운·노승우, 「민중주체중립화통일론」(서울:전예원, 1988).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해외동포가 본 北韓과 그들의 統一論理」(서울:
 민중사, 1988).
- 한상진, 「민중의 사회과학적 認識」(서울:문학과 지성사, 1987).
- 한승수, 「南北接觸의 유형정립-교류유형에서 본 전략구도설정을 중심으로」
 (서울:국토통일원, 1973.8).
- 황동준, 「南北韓 關係에 적용할 델파이기법등 제기법의 適用에 관한 연구」
 (서울:국토통일원, 1977).
- 황인관·정대화 譯, 「중립화통일론」(서울:신학문사, 1988).

나. 논 문

- 김낙중, “누가 民族統一의 주체인가?”, 「民族統一」(서울:민족통일촉진회,
 1986.7~8).

- 김명기, “남북한 統一政策의 비교평가”, 「國際問題」(서울: 국제문제사, 1985. 9).
- 김명진, “목자의 비공론적 시각에서의 韓國統一方案의 조명”, 「통일문제연구」(서울: 건국대 중국문제연구소, 1986.11).
- 김영환, “民主主義革命과 民族解放”, 「항소이유서」(서울: 사상계, 1988).
- 김중기, “민족해방자주화와 聯邦共和國의 창설”, 「社會와 思想」(서울: 한길사, 1988.9).
- 김중익, “한국통일정책의 재고와 摸索”, 「제4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서울: 한국정치학회, 1981).
- 김호진, “分斷克服의 이론과 정책”, 「民族統一의 방안과 政策方向」(서울: 민족통일학회, 1989).
- 김학준, “남북한에 있어서 통일논의의 전개”, 「한국민족주의론 I」(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 _____, “민족통일운동의 전환기”, 「신동아」1980년 1월.
- 민병천, “통일방안의 新摸索”, 「북한학보」(서울: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1986. 12).
- 문익환, “연방제 통일의 3단계 과정”, 「사회와 사상」1988년 9월호.
- 박 실, “김대중씨의 統一方案은 이렇다”, 「민족지성」1988년 4월호.
- 백기완, “자유의 回復과 統一論議의 주체적 脈絡”, 「민족·통일·해방의 논리」(서울: 형성사, 1984).
- 서광우, “민중통일론이 주장하는 것들”, 「민족지성」1988년 4월호.
- 송건호, “統一論議의 한계와 반공법”, 「신동아」1971년 10월.
- _____, “한국분단의 민족사적 의미”, 「기독교사상」1985년 8월.
- 양동안, “분단극복과 통일이념의 摸索”, 「현대사회」1985년 가을호.
- 윤병익, “민중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 「자유공론」1985년 10월.

- 오충일, “體制와 이념초월해 민족공동체 건설”, 「사회와 사상」1988년 9월호.
- 이재오, “자주·민주·통일의 새날을 열자”, 「민족지성」1988년 4월호.
- 장명봉, “國家聯습의 한 사례고찰-아랍공화국연합의 경우”, 「통일논총」제6권 2호, 1986.
- 정대화, “80년대통일의 가능성과 統一方案”, 「통일논총」제3집 (부산: 부산대 통일문제연구소, 1981).
- 조봉암, “平和統一에의 길”, 「중앙정치」1956년 10월.
- 조순구, “중립화의 適用可能地域에 관한 사례연구-韓國問題에의 타진을 위한 이론적 시도”, 「전북대논문집」제17집, 1985년.
- 조순승, “한국중립화는 가능한가”, 「사상계」1960년 12월.
- 천관우, “民族統一을 위한 나의 제언”, 「창조」1972년 9월.
- 한상진, “民衆社會學의 理論構造와 爭點”,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1986년 8월).
- 황인관, “韓半島 중립화의 개연과 당위성”, 「민족통일」1985년 7·8월.
- Akehurst, M.,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0).
- Aron, R., Peace and War (New York: Praeger, 1966).
- Bernier, I.,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Federalism, (London: Longmans, 1973).
- Black, L.E., Folk, R.A. and Young, D.R.,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8).
- Borchard, Edwin and Lage, W.E., Neutrality for the United Sta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0).

- Bowett, D.W., United Nations Force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4).
- Bowie, R.R. and Frederich, C.J., Studies in Federalism (Boston: Little Brown, 1954).
- Buss, Claude 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2).
- Castren, E., The Present Law of War and Neutrality (Helsinki: Suomalaisen, 1954).
- Cheer, D.S. and Haviland, H.F., Organizing for Peace (Cambridge: Massachusetts, 1954).
- Choy, Bongyoun, Korea: A History (Ruth, Vermont and Tokyo: Charles E. Tuttle Co., 1982).
- Clare, Kenneth G. (et al.), Area Handbook for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 Crawford, J.,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1979).
- Cyril E. Black,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 Dickett, Jeons, Red Crossing Principles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56).
- Friedmann, W.,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1973).

- Friedrich, C.J., Trends of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Praeger, 1968).
- Goodrich, L.M.,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rowell, 1959).
- Goodspeed, S.S., The Nature and Fun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2nd ed., (London: Oxford Univ. Press, 1967).
- Greespan, M.,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 Press, 1959).
- Henderson, G. Lebow, R.N. and Stoessinger, J.G.,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McKay, 1974).
- He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Hofer, Walter, Neutrality as the Principle of Swiss Foreign Policy (Zurich: Schweizer Spiegel Verlag, 1957).
- Hwang, In K., The Korean Reform Movement of the 1880'y: A Study of Transition in Intra-Asian Relations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 1978).
- , The Neutralized Unification of Korea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 1980).
- Jakobson, Max, Finnish Neutrality: A study of Finnish Foreign Policy since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Frederick A Prager Publishing, 1969).
- Jessup, Philip, and Francis Deak, Neutrality: Its History, Economy and Laws (4 Vo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5).

Kang, Young Hoon and Yim, Yong Soon (eds), Politics of Korean Reunifica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7).

Kelsen, Hans,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London: The London Institute of World Affairs, 1951).

Kim, Byong-sik, Modern Korea: Revolutionary Perspective in the South and Unificat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1970).

Kim, C.I. Eugene (ed.), Korean Unification: Problems and Prospects (Kalamazoo: Korean Research and Publications, 1973).

Kim, Hak-Joon, The Unification Policy of South and North Korea: A Comparative Stud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Kim, Sei-Jin (ed.), Korean Unification: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_____,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Kim, Young Jeh, Roads for Korea's Future Unification (Hong Kong: Asian Studies Monograph Series, Published by Asian Research Service, 1980).

Livingstone, W.S., Federalism and Constitutional Change (Oxford:

Clarendon, 1956).

Locke, J.,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Univ. Press, 1960).

Lyons, Gene Martin, Military Policy and Economic Acids: The Korean Case, 1950-1953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61).

Martin, Laurence W. (ed.), Neutralism and Nonalignment: The States in World Affair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Publishing, 1962).

McCune, Shannon, Korea's Heritage: A regional and Social Geography (Rutland, Vermont and Tokyo: Charles E. Tuttle Co.,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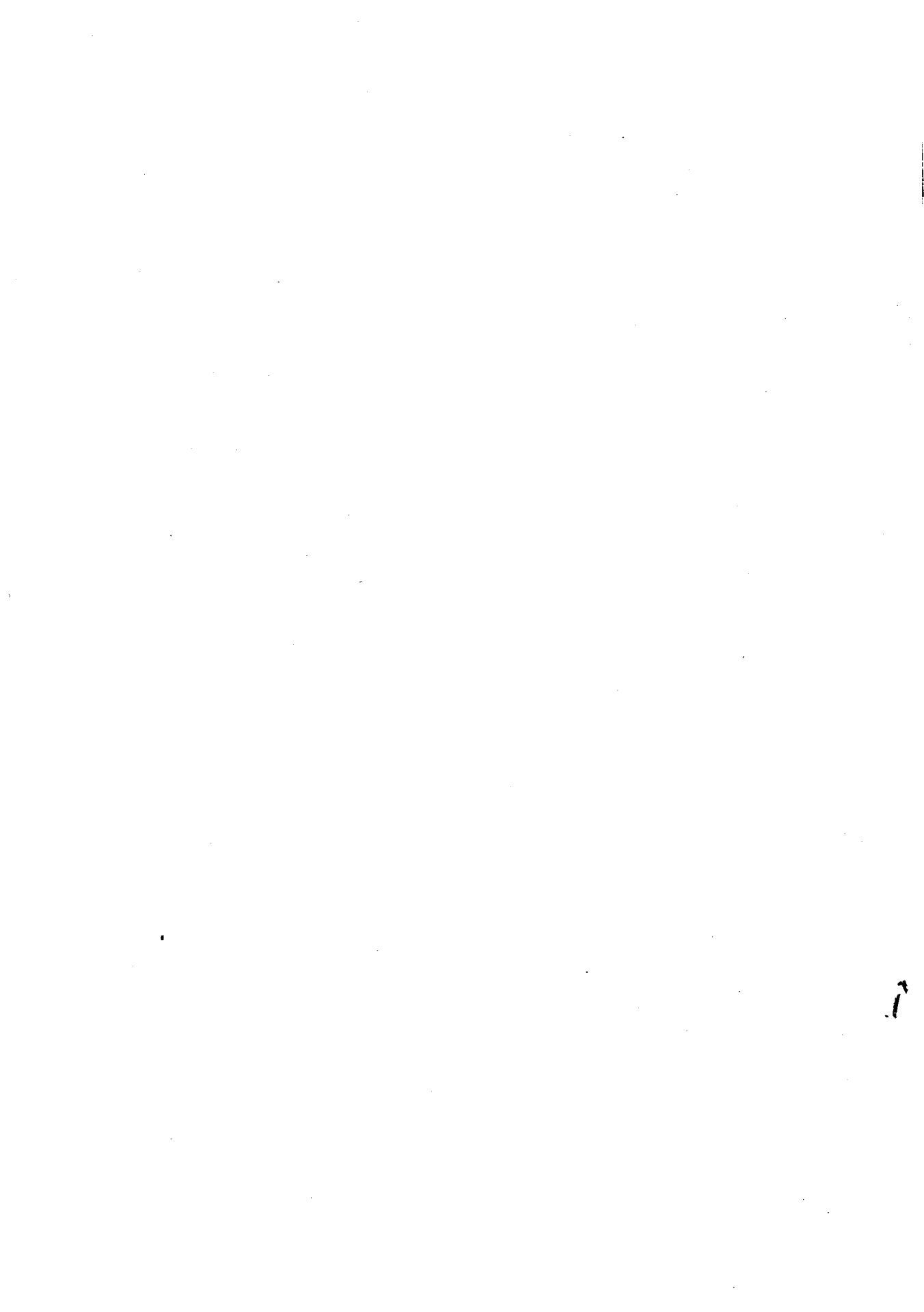
O'Connell, D.P., International Law, 2nd ed., Vols. 1-2 (London: Stevens, 1970).

Paige, G.D., The Korean Decis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Russell, R.B., The United Nations and States Security Policy (Washington: The Booking Institution, 1964).

Singh, N.,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1959).

Weissberg, G.,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Oceana, 1961).



祖國統一모델에 관한 研究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1 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번지

정부종합청사 405 호 TEL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 양 동 문 화 사

<非賣品>

